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최 세 군 부 연구 위원
이 재 옥 수석연구위원
어 명 근 부 연구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최 세 균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집필
이 재 옥	제2장, 제3장, 제6장 집필
어 명 근	제3장, 제7장, 제8장 집필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최 세 군 부 연구 위원
이 재 옥 수석연구위원
어 명 근 부 연구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최 세 균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집필
이 재 옥	제2장, 제3장, 제6장 집필
어 명 근	제3장, 제7장, 제8장 집필

머 리 말

우리 나라 산업정책은 산업유인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산업유인정책 가운데 관세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한 국제화와 개방화 과정에 있으며, 관세장벽의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진행되고 있어 관세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관세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부문 관세율 구조는 기존의 다양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이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한 관세상당치와 종량세 도입 등으로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누진관세와 역관세, 균등관세와 차등관세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관세단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와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관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산업 종사자, 관세정책 담당자 그리고 학계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한국식품공업협회, 관세청, 식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99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5
2. 관세제도의 특징 9

제 3 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1. 관세제도의 변천 11
2. 우리 나라의 현행 관세제도 18

제 4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분석

1. 기본관세율 구조 38
2. 양허관세율 구조 43
3.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45

제 5 장 기본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1. 기본관세의 단계와 종류 71
2.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73
3. 누진관세체계 비교 78

제 6 장 외국의 관세제도

1. 일본의 관세제도	83
2. 미국의 관세제도	100
3. EU의 관세제도	103

제 7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개편 방향

1. 관세정책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106
2. 관세율 단계 확대 및 부과방식의 다양화	108
3. 관세율 조정	109
4.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112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4
2. 기본관세율 구조	115
3. 양허관세율 구조	116
4.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118
5.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119
6.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 방향	121
7.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124

Abstract	125
----------------	-----

표 목 차

제 3 장

표 3-1 제2차 관세 인하 5개년 계획의 관세 인하 내용	19
--	----

제 4 장

표 4-1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분포(1998년)	42
표 4-2 주요국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분포(1998년)	43
표 4-3 농산물 및 식품의 양허관세율 분포(1998년)	48
표 4-4 가공 단계별 관세율 현황(1998년)	49
표 4-5 주요 농산물의 실효보호율	66
표 4-6 주요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	67
표 4-7 가공식품 제품별 실효보호율	70

제 5 장

표 5-1 가공식품의 경쟁국간 관세율 비교(1998년)	76
표 5-2 OECD 국가들의 제과류 기본관세율 비교(1998년)	77
표 5-3 원료와 완제품의 관세율구조 국제 비교(1998년)	79
표 5-4 일본의 누진관세율 체계	82

제 6 장

표 6-1 일본의 관세율 형태별 품목수(1997년)	90
표 6-2 일본의 주요 농산물 비중가 실적관세율(1996년)	94

표 6-3	일본의 관세할당 주요 품목(1997년)	95
표 6-4	일본의 현행시장접근 품목	96
표 6-5	일본의 최소시장접근 품목	98
표 6-6	일본과 주요 국가별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비교(1996년)	99

부 표

부표 1	양허관세율과 기본관세율 분포	130
부표 2	EU의 관세율	131
부표 3	미국의 관세율	136
부표 4	일본의 관세율	141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관세의 경제적 효과	6
--------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산업유인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며 산업유인정책 가운데 관세정책은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역 자유화라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관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국제화와 개방화 과정에 있으며 관세장벽의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세인하와 관세양허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관세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기능(또는 시장기능) 조절에 의한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열 일곱 차례에 걸친 관세율 개정과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를 통해 평균 관세율을 인하하고 산업간 균등관세율 체제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관세율 개편에서 관세부처간 협의가 가장 어려웠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개편으로 알려져 있다(박상태, 1996, p. 225).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식량안보, 농가소득, 농업의 경제외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농업보호론과 국내 생산이 불리한 산업은 관세 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농업개방론이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농가소득 작물의 경우 높은 관세를 유지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의 관세는 낮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기타 농산물의 관세는 서서히 인하되어 왔으며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농산물과 사치성 농산물의 관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관세정책에 의해 일부 기초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기초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대부분 저율의 중심세율인 8%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국정관세(기본관세, 잠정관세, 관세환급, 각종 탄력관세 등), WTO 양허관세 등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고율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와 종량세를 도입하여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농업과 식품 산업간에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와 역관세(역누진관세, Reverse Tariff Escalation), 균등관세 제도와 차등관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¹⁾. 또한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단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

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와 농업과 식품 산업간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적절한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가공식품 산업은 일부의 주장과 같이 역관세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가 취약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양면을 고려하여 완제품과 원료의 관세율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연구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고 현행 관세율 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관세율 가운데 중심이 되는 기본관세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일부 품목의 수입에 부과되

¹ 누진관세는 원료보다는 그 가공품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거나 가공품 사이에는 가공도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누진관세제도는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상품을 싼값에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완제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이다. 역관세는 그 반대되는 형태로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는 의미이다. 균등관세는 모든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차등관세는 품목간에 관세율의 차이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관세가 곧 누진관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있는 양허관세율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효보호율 구조를 분석하였다. 실효보호율 계산은 역관세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가공식품에 한정하였으며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일부 품목만 분석되었다. 조사된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국들의 가격, 관세율, 기본관세율 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제 2 장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는 수입수량의 제한, 즉 쿼터제도와 함께 수입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단위물량당 부과되는 종량관세와(specific tariffs)와 수입가격의 일정율을 부과하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가 있다. 관세는 쿼터와는 달리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정수입이 수반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국내시장에서 해당상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 생산자는 보호하는 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시키는 경제적효과 측면에서는 쿼터와 동일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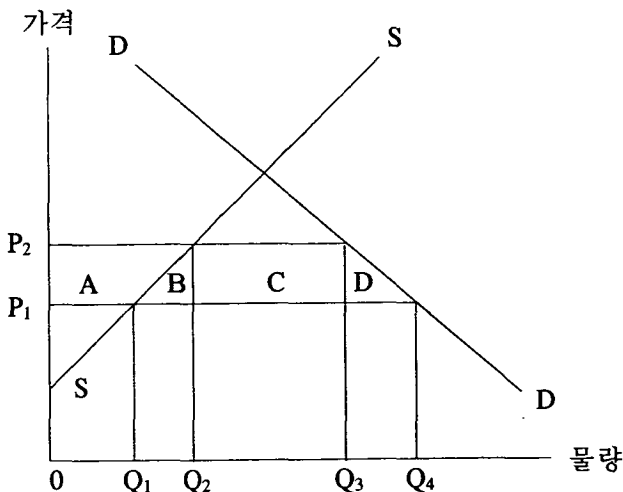
수입 농림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내가격을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높게 유지시킴으로 해당산업의 생산과 소비, 소득배분, 자원배분, 재정수입, 국제수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분균형모형에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해당국가가 세계시장의 가격형성에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 작은

국가라고 가정하면 이 국가가 직면하는 수출공급 곡선은 특정 세계시장가격의 수준에서 수평선이 된다. 무역장벽이 없고 세계시장가격이 OP_1 이라면 국내생산은 OQ_1 이고 국내소비는 OQ_4 가 된다. 이때 국내외 농산물간에 질적 차이가 없고 동질적이라면 국내소비와 국내생산간의 차이만큼인 Q_1Q_4 의 물량이 수입된다. 그러나 해당 농림산물에 대해 종량세(specific tariff) t 를 부과하면 국내시장가격은 P_1 에서 P_2 로 상승하여 국내생산은 OQ_1 에서 OQ_2 로 증가하는 반면 국내소비는 OQ_4 에서 OQ_3 로 감소하며 수입은 Q_1Q_4 에서 Q_2Q_3 로 감소하게 된다.

1.1. 생산효과

해당품목이 쇠고기라 가정하면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가격의 상승과 생산증가로 소 사육농가의 소득(생산자 잉여)은 A만큼 증가하는 동시에 사료, 노동력, 수의약품과 서비스 등 투자재산업의 경우에도

그림 2-1 관세의 경제적 효과



수요증가로 이득을 보게되고 여타 축산부문에서 쇠고기산업으로 이동하게된다. 생산요소가 쇠고기산업으로 재배분되는 과정에서 여타 농산물이나 축산부문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대체 효과로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한 가격도 강세를 보여 자원재배분에 따른 이들 품목의 생산감소와 소득손실의 일부를 보완하게 된다.

1.2. 소비효과

쇠고기의 가격상승과 소비위축(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소득효과와의 합)으로 쇠고기 소비자에게는 $A+B+C+D$ 만큼의 잉여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소비대체효과에 따른 대체재(돼지고기) 수요의 증가(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할 경우)와 대체재 생산의 감소로 대체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또한 쇠고기의 수입량감소와 가격의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업자나 수입육가공업자의 소득은 감소한다.

1.3. 재정효과

관세부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 C 는 관세수준과 해당품목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치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보다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위 관세수준에 의한 재정수입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식량의 국내자급과 외화절약, 그리고 재정수입의 제고 등 정책효과가 큰 반면 조세저항이 낮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선호하게 된다.

1.4. 사회적 후생의 변화

관세부과 후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의 손실($A+B+C+D$) 중 A 는 생산

자잉여의 증가(쇠고기 사육농가의 고정자산, 즉 토지, 자본장비, 인적 자본 등이 획득하는 가치)로 C는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일부 회수되나 B와 D는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비용(dead weight loss)으로 남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복지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B는 쇠고기 생산이 Q_1Q_2 만큼 증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변동요소에 대한 지불액의 합계에서 해당물량을 수입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B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비싼 비용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생산증가에 따른 “효율성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D 역시 어느 부문도 회수하지 않고 순수히 사라지는 소비자잉여의 손실이다.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비용 역시 관세수준과 해당품목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수요공급의 가격 비탄력적인 특징에 따라 사회적비용의 크기는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무역제한 정책의 정책비용이 적은 관계로 농산물의 경우 수입제한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의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변화 분석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관세수입 등이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화폐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은 일반소비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생산자(축산업자)의 경우 더 크므로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의 잉여보다 더 큰 가중치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럴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부과로 인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거나, 무역자유화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2. 관세제도의 특징

관세 부과는 정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나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국내산업 보호에 의한 경제성장의 편익이 단기적인 사회적비용을 상쇄할 경우 오히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관세제도는 생산자 보호 또는 어느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자보조보다 사회적비용을 더 크게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산자보조를 관세수준과 동일한 t 를 단위물량당 지원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생산과 농가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비용 B 는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수입수량의 조절에 있다면 관세는 같은 율의 생산자보조나 소비세보다 우수한 정책수단이다.

관세와 쿼터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생산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억제하여 결국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입물량을 일정수준 유지시키기 위한 쿼터제도는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 효과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관세와 비관세조치는 동등성(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이 있다고 한다. UR 농산물협상에서 비관세조치를 철폐하고 관세화하자는 주장은 이와같은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세계시장가격 등 경제여건(parameters of the economy)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측면에서는 관세와 쿼터제도의 상당성은 없어지게 된다. 가령 세계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쿼터제도 하에서는 수입량이 일정한 반면 관세제도에서는 수입량이 크게 변동하게 되어 경제적효과는 동일할 수 없다. 공급측면에서 생산비가 상승한 경우 쿼

터제도는 관세제도보다 국내가격을 더 큰 폭으로 상승시켜 생산감소가 적어지고 생산비 인상분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동태적 비상이성까지를 고려했을 경우 UR 농산물협상에서의 관세화조치로 인하여 외형적 보호의 효과는 동일하더라도 보호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무역제한 조치가 관세제도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세계시장의 가격변화가 그대로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생산, 소비, 수입량이 크게 변동하게 되고 농가소득의 안정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제 3 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1. 관세제도의 변천

1.1. 구한말의 관세제도

우리 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관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76년 개항(開港) 이후 대외 통상을 시작할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강화조약(江華條約)과 일본상선의 출입과 화물 운송, 양곡 수출입, 아편금수, 항세(港稅)규정 등으로 이루어진 한일 무역규칙(韓日貿易規則) 등 불평등 통상조약에서 관세 부과 문제가 제외되어 1883년까지 7년간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1882년 미국과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관세자주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종가(從價) 10~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모든 수출품에 대해 종가 5%의 수출세를 부과하

게 되었다. 일본과는 1883년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과 해관세칙(海關稅則) 등의 협약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 상인에게는 최혜국 대우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시기의 관세 체계는 단순하였으며 대상 품목도 많지 않은 소규모로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낮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설정되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계통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원료품과 가공품 사이에 뚜렷한 분류 기준이 없었지만 관세율은 세분화되어 품목별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자주권을 잃은 채 일본의 강요에 의한 무역과 불평등 협정에 따른 관세제도는 재정정책적 기능이나 산업정책적 기능이 상실된 채 형식적인 관세 체계로 머물고 말았다.

1.2. 일제시대의 관세제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20년까지 10년간은 합방전 구한말의 관세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와 공업화의 수준 차이로 동일한 관세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무역이 일본에 편중되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관세제도는 관세 수준이 낮고 무관세가 광범위하게 확대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20년대 들어 일본은 구한말의 관세 체제를 모두 철폐하고 한일 통일관세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우리 나라 관세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수탈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관세를 폐지하였다. 한일통일관세제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1.3. 정부수립 이후 초기의 국정관세제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정부수립까지 미군정 체제하에서는 일제 시대의 관세제도를 답습하면서 관세율을 10% 이하로 전면 인하하였다. 또한 1948년에는 종량세 위주의 관세제도를 일할균일종가세(一割均一從價稅)로 개정하였다. 미 군정기 관세 제도 운용의 가장 큰 목적은 악성 인플레이션과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 고유의 재정정책적 기능이나 산업정책적 기능은 도외시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일제 시대의 다원화된 관세 제도를 모두 정비·통합하여 1949년 11월 23일 전문 252조의 단일 관세법(關稅法)과 부속세율표(附屬稅率表)로 구성된 법률 제67호가 공포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국정관세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관세법에서는 상품 품목을 자연과학적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15 개류(유기물: 제1류~제9류, 무기물: 제10류~제14류, 잡제품: 15류), 756개의 세번수(稅番數), 그리고 1,706개의 세율수(稅率數)로 구분하였다. 과거 협정세율과 식민지 관세가 국정관세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세율 30%, 최저세율 10%, 최고세율 100%로 평균관세율이 26%인 관세체계를 이루게 되었으며 공평한 관세 부과와 세수 확보의 탄력성을 위해 일률종가세(一律從價稅)를 채택하였다.

최초의 국정관세제도는 정부수립 초기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건설, 교육 등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원료, 문화·교육·공익상의 필요물품, 그리고 부족한 물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역할도 하였다.

6·25 동란기에는 전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세임시증징법(關稅臨時增徵法)이 제정되어 원조물자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세평가방법의 개선 등 재정관세 기능이 강조되었다. 관세율표상의 무관세 품목 가운데 식량과 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143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 1할의 임시관세를 부과하고 원조물자에 대한 과세를 1950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이중환율의 격차 확대로 관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역산제(市價逆算制)를 채택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세부담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관세 제도는 외국 원조물자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며 1957년에는 신관세제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란에 의해 파괴해진 경제 사정과 전후 복구사업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미국의 원조 증가에 따른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법률 제429호에 의거 「관세임시증정법」을 폐지하고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하여 「별표세율표(別表稅率表)」로 하여 최초로 누진 관세체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관세율표상의 품목 분류는 1949년과 동일하였으나 세번수(稅番數)는 726개, 세율수(稅率數)는 1229개로 각각 축소하였으며 평균관세율은 26%에서 30.3%로 인상하였다.

1957년 개편된 관세제도는 보호관세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 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외국 산업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관세를 높여 책정하였다. 둘째, 주요 기간산업에 필요한 기초시설재에 대한 관세는 저율로 책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셋째, 차등관세제도를 도입하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저율, 가공도가 높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고율로 책정하였다. 또한 사치품과 불필요한 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관세의 성격과 함께 문화재, 과학진흥, 공익용품, 천연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등 본격적인 국

정관세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4. 1960~70년대

1960년대의 관세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단순가공·조립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 산업정책적·제도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중세제 신설과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내 소비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을 규제하는 방향의 관세정책이 시행되었다.

1960년대 관세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기본관세의 평균세율은 1961년 47.7%에서 1968년 38.7%로 점차 인하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40%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면세품을 최소화하고 재정관세 품목을 설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재정관세를 부과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시작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수출증대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1967년에는 15%를 상회하였다.

한편 산업과 무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품목분류가 증가하여 1968년에는 1097개의 세번과 3019개의 세율이 되었으며 소비재와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원자재와 시설재에는 낮은 관세율이 책정되는 누진관세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주요 산업기계와 제1차 금속, 그리고 공업용 원자재 등도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가 책정되는 산업보호정책도 강화되었으며 사치품이나 기타 수입억제 대상 품목에는 최고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1967년에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긴급관세와 상계관세, 편익관세 및 관세할당제도 등 탄력관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중요한 산업 설비 등에 대한 종래의 면세위주 지원책을 지양하고 관세 징수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세수입 확보를 통한 재정정책적 기능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70년대 전반에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중간재 산업의 적정보호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1973년 개편에서는 최초로 잠정세율제도를 도입하고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비료, 농기계, 어선 등의 중간재 또는 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한편 가공단계에 따른 차등관세제도가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려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73년 1097개의 세번수가 1978년에는 1010개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에 세율수도 3985개에서 2209개로 감소하게 되었다.

1976년 개편시에는 과다 보호와 과소 보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율구조를 더욱 단순화하고 중심세율 20%가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균등관세율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1978년에는 다시 차등관세율제도로 복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에 0~30%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생필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확립된 완제품 산

업에 대한 과다 보호수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자립화와 동시에 물가안정을 유도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금지적 수준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던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을 점차 인하하였으며 그 대신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의해 소비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적 분배를 규제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관세의 재정수입 측면보다 산업보호와 수입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어 1960년대 15%를 상회하였던 총조세 수입에 대한 관세수입의 비중이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인 평균세율도 1966년 38.7%에서 1978년 24.9%로 하락하였다. 특히 1978년 개정에서는 중화학 공업용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물가평형관세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산업정책과 물가정책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5. 1980년대 이후

1980년대의 관세제도는 차등관세율제도에서 균등관세율제도로 이행하였다는 점과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다는 두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높은 관세율을 통한 산업보호를 축소하고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율 격차를 줄여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중심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평균관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누진적 체계를 갖는 차등관세제도에 따른 특정산업 보호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자생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킨다는 취지로 균등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관세율의 급격한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세율을 중심세율 위주로 책정하여 중심세율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한편 중심세율 자체를 연차적으로 2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이 전혀 없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비경쟁 원자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되었던 투입재와 생산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재에 대한 높은 보호세율도 인하하여 내수 위주의 산업보호를 완화하였다.

2. 우리 나라의 현행 관세제도

2.1. 농산물의 기본관세율 현황

제1차(1984~88)와 2차(1989~93)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으로 우리 나라 수입품 전체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83년 23.7%에서 1988년에는 18.1%로 하락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8%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1983년 31.4%에서 1988년 25.2%로 인하되었다. 또한 중심세율 위주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도입하여 산업간 차등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 중심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원자재에는 1~3%, 1차 가공품에는 5%의 낮은 관세가 각각 부과되었다(표 3-1).

두 차례의 관세인하 결과 농축산물 분야는 농가소득작물과 그 대

제품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만성적 할당관세 및 잠정세율 품목 등 278개 품목은 1988년의 관세수준이 유지되었으며 농업투자재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료, 그리고 사치성 식품 등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그러나 국내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대두유, 후추, 설탕 등 가공식품의 관세는 1988년 20%에서 1993년 8%로 인하하고, 초콜렛도 30%에서 8%로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관세가 높은 원료농산물과 중심세율을 적용받는 가공식품간에 역관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 8%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들이다.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곡물과 박류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자류는 대부분 0%, 공업용 원료인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3%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도 과수묘목, 구근류, 종마 등 농업용 자재와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표 3-1 제2차 관세 인하 5개년 계획의 관세 인하 내용

구 분	1988	1989	1993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경쟁원료	10%	5%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	20%	15%	8%
국산화(경쟁력 제고)곤란품목	10~20%	10%	8%
사치성 소비재	30~50%	20%	8%
예외품목			
국제관례 무세 농산물	무세~100% 별도세율	무 세 별도세율	무 세 별도세율

자료: 박상태, 「관세정책요론」, 1996.

반면에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와 그 종자(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3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 등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다. 그 밖에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쥬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국내 생산이 많거나 농가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및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2.2.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 현황

가공식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균등관세율 체계와 관세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8%의 중심세율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중간재 성격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낮았기 때문이다.

과자류와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대부분의 품목에 8%의 관세가 책정되었고 참기름과 들기름, 유채유, 낙화생유 등과 같이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당류와 팜유, 코코아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일부 중간재에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및 과일쥬스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불과하였다.

2.3. 기본관세율 제도의 평가²

최근 우리 나라 기본관세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율을 중심세율로 균일화하는 균등관세율제도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과 평균세율을 8%의 중심세율로 인하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산업간·품목간 실효보호율을 균등하게 하여 비교우위산업의 자연적 특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국세 제도상의 보호 등 다른 보호구조가 동일하지 않아 실효보호율의 균등화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균등관세율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1, 2차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시행 결과 평균관세율은 1984년에 21.9%였으나 1994년 이후 7.9%에 불과하여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난국으로 인한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 현행 8% 관세율은 국내산업의 관세과잉(Tariff Redundant)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WTO 협상에서 양허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APEC에서는 WTO의 양허세율을 더 빨리 인하하는 조기자유화 문제를 논하고 있으며 칠레 등 대륙별,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어 중심세율 8%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 결국 균등관세율체계 개념을 도입한 지난 15년간의 기본관세율 구조로 인해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WTO 협정 등에 따른 관세 장벽 완화로 세율은 더욱 인하되어 균등관세율제도의 효율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관세청, 1998). 또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적 측면

² 기본관세율 구조의 평가는 관세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정책 운영방안(1998년 5월)”을 참고하였다.

에서 추정된 현행 관세율 수준은 부담능력에 비해 관세의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세율 조정을 통해 세율을 더 낮출 경우 내국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 부족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율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입장과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관세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관세율 구조개편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되 향후 차기협상에서의 관세협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기초농산물은 50%의 높은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많다. 반면 기초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8%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많다.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 구조는 품목군별, 산업별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구조적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율구조로 인해 위장 또는 편법으로 통관하거나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8%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국내 식품가공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이 높은 기초농산물과 8% 균등관세가 적용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적정 기본관세율 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적, 다각적으로 검토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농산물에 대하여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품 수입의 38%, 공산품 수입의 11%가 종량세 적용 대상 품목임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도 종가세 위주의 단순한 관세체계를 개편하여 국내 농업보호에 효과적인 종량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4. 탄력관세제도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국내외 경제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부 아닌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관세율 수준을 규정하고 세율의 변경은 전적으로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각종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의한 관세율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관세법에 탄력관세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3년 법률 제1461호에 의한 관세법 개정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및 할당관세제도 등 본격적인 탄력관세제도가 운용된 것은 1967년 법률 제1976호에 의해 관세법 개정부터이다. 이후 잠정관세와 조정관세, 그리고 계절관세 및 물가평형관세 등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탄력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 종류별 적용순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7조).

2.4.1.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

관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며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 및 제43조 8의 제3항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할 관세의 종류와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 관세의 적용순서를 종합해보면 먼저 1순위에는 관세법 제10조의 덤핑방지관세, 제11조의 보복관세, 제12조의 긴급관세, 제12조의 3에 따른 특별긴급

관세, 그리고 제13조에 규정된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들로 구성된다.

2순위에 속하는 관세는 제14조의 편익관세와 제43조의 8에 규정된 국제협력관세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관세 가운데 WTO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포함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와 “일반양허관세”,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쉬, 라오스의 가입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별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도 2순위에 속한다. 국제협력관세는 3순위와 5순위 그리고 6순위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만 가입회원국만을 상대로 적용된다.

3순위에는 제12조의 2에 따른 조정관세와 제15조의 물가평형관세, 그리고 제15조의 2에 의한 계절관세와 제16조에 규정된 할당관세가 포함된다. 4순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서 WTO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다 “녹차의 일반양허관세”가 여기에 포함된다.

5순위는 제7조에 의한 잠정관세로서 농림축산물 가운데 밀과 메슬린, 사료용 및 팝콘용 옥수수, 대두, 유채, 그리고 콩깻묵 등이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순위는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종류별로 도입 목적과 적용 요건, 범위 및 세율 수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2.4.2.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10조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

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덤핑은 불공정 무역거래를 통하여 수입국 시장을 독점시장으로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생산자를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덤핑차액은 거래시점과 단계, 제품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운송료, 포장비, 보험료, 판매수수료 등에 의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차액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GATT 규정상의 덤핑에 관한 정의 및 피해에 대한 표현을 일치시킴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야기될 수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또한 신속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해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권자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잠정조치 적용기간 제한을 삭제하였다.

2.4.3. 보복관세

관세법 제11조는 보복관세를 “교역상대국이 우리 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 관세 또는 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 나라의 편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및 기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의 결과 우리 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보복관세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복관세의 발동은 상대국으로부터 상응한 보복조치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복관세는 발동보다 입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복조치 발동 이전에 양국간의 통상협상이나 조약 체결 또는 차별대우 시정 요청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4. 긴급관세

긴급관세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12조 1항에 의한 제도이다. WTO 규정 제19조 1항도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관세양허의 수정 및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긴급관세제도를 용인하고 있다.

UR 협상으로 관세화 품목이 크게 증가한 최근에는 양허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남용으로 국제무역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정 제19조 2항과 3항은 긴급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가능한 한 빨리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그 대상 물품에 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발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면책조항(Escape Clause)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와 그 피해의 원인이 관세 양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관세법 제12조 2항은 긴급관세율을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의한 물품중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량 전부가 아닌 ‘초과 수입량’만을 긴급관세율 부과대상으로 한정하였다. WTO 규정 제19조의 Safeguard 규정의 정신과 일치시키고 수입 억제에 실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4.5. 조정관세

조정관세는 긴급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물품이나 기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이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하나이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WTO의 Safeguard 규정에 상관없이 발동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관세율 인상 등에 대한 국제적 제약이 적다.

관세법 제12조의 2는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을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 개발된 물품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의 1내지 4호). 이때 부과되는 조정관세율은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이지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관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항) 따라서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 조정관세율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4.6.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제도는 WTO 출범의 기초가 된 마라케쉬 협정의 농업에 관한 협정문에 따라 WTO 농업협정문 제5조에 규정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guard)”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994년 12월 31일 신설된 관세법 제12조의 3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 협상에서 관세상당치로 양허되어 관세화된 품목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12조의 3).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제12조의 긴급관세제도와 달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유무에 상관없이 물량기준이나 가격기준만 충족되면 발동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관세 부과후에도 상대국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는 제약조건이 없다. “관세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와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기준발동물량 및 기준가격과 부과대상 품목 및 특별긴급관세율 등을 별표에 명시하였다.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대상 품목은 WTO 농산물 관세양허표상에 SSG로 표시한 111개 품목이며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발동되는 품목은 젓소 및 육우의 종우를 비롯하여 고구마, 보리, 전분, 인삼 및 인삼제품 등이 포함된다. 기준발동물량은 기준발동계수에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을 곱하고 전년 대비 소비변화량을 더한 값이 된다. 기준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낮아져서 점유율 10% 미만은 계

수 125%, 점유율 10%에서 30% 이내는 계수 110%, 그리고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계수 105%가 적용된다. 당해 연도 수입물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상당치의 3분의 1이 가산된 특별긴급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율의 범위는 12%(육 또는 설육의 조분 및 펠리트)에서 1072%(인삼 및 인삼제품)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가격기준 발동 대상 품목은 골분과 녹두, 메밀, 이눌린, 고구마 전분, 낙화생 등 12개이며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액도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의 하락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30%이고 하락율이 100분의 40에서 60 사이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30%,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부과할 수 있다.

2.4.7. 상계관세

관세법 제13조 제1항은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관세의 취지는 교역당사국간에 공정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한 나라가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 혹은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비교우위를 왜곡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가 상계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GATT는 1973년 도쿄라운드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였다. GATT 규정 제16조는 보조금을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지불금”으로 정의하였다.

UR 협상에서 농업보조금은 농산물 협상에서 다루고 농업보조금 이외의 기타 보조금은 보조금 상계관세 협상 그룹에서 논의하였다. 협상 결과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의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 사용 촉진관련 보조금 등으로서 사용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사용시 WTO 의무 위반으로 신속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타국의 산업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으로서 사용은 가능하나 타국에 불리한 효과, 즉 타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타국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 등을 야기하였을 경우 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허용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조금으로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용에 제한이 없고 타국에 심각하고 불리한 효과를 미칠 경우를 WTO 절차에 따라 협의 등 적절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지원과 농산물 수출보조는 WTO 농업협정의 규제를 받지만 농업보조금 지급 규정 위반의 경우 상계조치 등 대응조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기준과 절차규정이 준용된다.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유사하지만 보조금이 가액 대비 1% 미만의 소액(de-minimis)이거나 보조금 받는 물품의 수입량이나 피해 정도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면 조사를

즉각 종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2.4.8. 편익관세

편익관세제도란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해 외국과의 조약의 한도 내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67년 관세법 15차 개정시 제14조에 의해 신설되었다. 제14조는 “관세에 관한 약속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정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편익관세는 한 나라가 기존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대하여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다른 나라에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주로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강화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다.

2.4.9. 물가평형관세

물가평형관세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특정물품의 수급절차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또는 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8년 관세법 개정시 계절관세에 포함시켜 운용하다가 1993년 개정시에 물가안정과 국내 농업지원을 위해 계절관세를 별도 조항(제15조의2)으로 독립시켰다.

이 제도의 취지는 우리 나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원유, 원면, 원목 등 기초 수입원자재를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물가평형관세는 차액관세와 활척(滑尺)관세로 구분된다.

차액관세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책정한 기준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국내 수급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기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기준가격 수준 이상으로 국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관세부담을 덜어 주어 국내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활척관세는 수입가격이 하락할 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국내 수급사정과 상관없이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상한가격을 책정하고 기본관세율에 의해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면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가격과 상한가격 사이이면 차액관세를 부과하며 상한가 이상이면 무세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활척관세제도는 수입품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낮을 경우에도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 수입이 확보되며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여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차액관세가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의 하향 및 상향안정 효과가 모두 있는데 비해 활척관세는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높을 경우의 하향안정효과만 있다.

2.4.10.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계절적으로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 계절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의 40% 범위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다. 출하기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국내 출하 기 및 비수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비출하기와 성수기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 물가 안정과 수급 균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 제15조의 2는 계절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 40%를 더하거나 빼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기간과 세율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농림부 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이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11. 할당관세

할당관세제도란 원활한 물자수급과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을 촉진하거나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세율에서 40%를 더하거나 빼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법 제16조의 2항 단서는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매 반기말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관세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품목과 인상하여 적용하는 품목별로 세율 및 수량을 명시한 할당관세율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998년 상반기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한 품목은 바나나뿐이며 세율은 70%, 수량은 2만 톤이었다. 반면에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품목은 사료용 유장분말과 치즈원료 등 낙농제품과 밀, 옥수수, 대두 및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류 등 농산물, 그리고 각종 광산물 등 많은 산업용 원자재가 포함되었다.

2.4.12. 잠정관세

잠정관세제도는 관세 정책 수행상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을 동시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잠정세율 적용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기본세율로 환원토록 한 관세로서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제도이다. 관세법 제7조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로는 먼저 신규 개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정부의 중점시책 및 중요 산업 등을 잠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책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나 기계류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그 물품의 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불요불급한 소비재로서 관련 국내 산업 생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원재료로서 그 물품의 수입가격 등이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박상태, 1996).

우리 나라는 1995년 현재 밀과 메슬린, 옥수수, 대두 및 대두박(각각 3%), 채종용 유채(10%) 등 농산물을 비롯하여 나프타와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용 원자재와 해체용 선박 및 공구류 등에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부분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

로서 그 물품의 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기초원자재로서 기본세율로 환원시 가격이 상승하여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다.

2.5. 탄력관세제도 운영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이상과 같은 여러 종류의 탄력관세를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물가 안정과 국내 특정산업보호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제도에 의한 물가 안정과 긴급관세제도에 의한 산업보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제도 및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조정관세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UR 협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의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간과 대상 품목의 선정, 그리고 탄력관세 관련 세부 규칙의 마련에 필요한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제도의 명료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영세성과 조직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산업보호수단인 탄력관세제도의 적용을 요청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탄력관세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관세청, 1998).

첫째, 시한부로 적용되어야 할 탄력관세가 계속 연장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실제로 부과된 세율은 탄력관세율이지만 이를 기본관세율로 간주하게 되어 탄력관세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성이 떨어지고 수출국으로부터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긴급관세나 조정관세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두 제도별 적용대상 품목 및 보호기간 등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조정관세와 긴급관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제도는 호황기에는 국제가격 상승 추세로, 그리고 불황기에는 관련 산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하한 할당관세율의 환원이 어렵다. 그리하여 인하된 할당세율이 고정되어 결과적으로 기본관세율과 같이 취급되므로 할당관세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력관세 운영세칙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의 운영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품목의 선정과 발동기간, 탄력관세율의 인상과 인하 폭 설정기준 등에 대한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덤핑을 판정의 공정성과 대외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영을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국내 및 생산국의 가격 정보에 밝은 기관 또는 조직에 맡겨 덤핑을 판정업무를 담당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6. 국제협력관세제도

국제협력관세제도는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거나 관세 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에 의해 관세를 양허하는 제도이다. 관세법 제43조의 8 제1항은 “정부는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 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세율 전부를 양허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양자간 관세협상에서는 기본관세율의 50% 이상을 양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다자간 국제협력관세로는 UR 협상에 의한 ‘WTO 양허관세’가 전 세계 148개 국가들을 상대로 양허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GATT/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NDC)’에 의한 15개국간의 양허관세가 있고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방콕협정’에 따른 5개국간 양허관세, 그리고 ‘범개발도상국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에 의한 43개국간의 양허관세가 있다.

양자간 협력관세를 위한 협상으로는 레몬과 아보카도 등 9개 농산물의 관세 인하에 관한 ‘한·미 농산물 협상’ 결과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포도주 및 관련제품 20개에 관한 ‘한·미 포도주 관세 협상’과 ‘한·영 위스키 협상’, 그리고 야자유 관세율 인하에 관한 ‘한·말 정상회담’의 결과 양허된 관세율이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1월부터는 UR 협상시 한·미간 쌍무 협상 결과 129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양허되었으며 1996년 1월 이후 위스키와 럼, 진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한·EU간 협상’ 결과 관세가 20%로 인하되었다.

제 4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분석

1. 기본관세율 구조

1.1. 기본관세율 분포

기본관세(General Tariff)는 관세주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국정관세의 하나이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율 이외에 잠정관세율(Temporary Tariff), 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은 관세율표(Tariff Schedules of Korea)에 “기본(General)”으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기본관세율의 높고 낮음은 중심세율 8%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세율이 중심세율보다 낮은 5% 이하의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관세율이 30%를 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산물과 식

품이 25% 이하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품목이다. 특히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사료곡물과 박류는 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종자는 대부분 0% 세율이 적용되고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양모, 면, 원피, 당류, 코코아두 등은 1~3%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심세율인 8%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농업용 자재 가운데 과수묘목, 구근류, 종마 등이 있다. 그밖에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묘목류와 구근류, 종마 등은 채소종자, 곡물종자, 과수종자, 종축(말 제외) 등 다른 농업용 자재보다 높은 관세율은 적용 받고 있다.

관세율 30%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육류(냉장 돈육 제외), 채소(고추, 마늘, 양파 제외) 및 채두류 및 그 종자(녹두, 팥 등), 버섯, 열대과실, 은행 등 견과류 등이다. 높은 관세율인 40~5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이상 40%의 관세 부과)와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쥬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이다. 이들 품목의 특징은 국내 생산이 많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기본관세율 분포로 볼 때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는 산업보호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량으로 수입되는 옥수수, 대두 등의 시장접근 물량에 대하여 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낮은 관세가 발작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료곡물과 박류도 5%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축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관세에 의한 높은 산업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용 종자, 종축은 0% 세율이 적용되어 농업보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단일관세율 체제와 관세인하 정책으로 가공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중심세율 8%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이 8% 중심세율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참기름, 들기름, 낙화생유 등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관세율 5% 이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당류, 팥유, 코코아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가공식품 가운데 3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도 많지 않다.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있는 것은 유가공품, 육가공품, 조제채소 등 원료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 일부 품목이다.

기본관세율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은 0~50% 사이에 분포하나 농산물은 어느 단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농업용 원료의 관세는 낮은 반면 국내 공급이 가능한 경쟁 품목의 관세는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의 관세는 8% 중심세율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0%에서 350%의 고율관세까지 관세율 분

포폭이 넓으나 주로 25% 이내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EU도 관세율이 50% 이하이며 25% 이내에 주로 많은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1.2. 기본관세율의 종류와 단계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은 12단계로 되어있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관세의 단계가 많은 것은 소수점 이하까지 관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품목간 누진관세 체계유지를 통한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단순한 관세단계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한국은 농산물 및 식품관련 기본관세를 종가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전체 세 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필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가세만을 부과하고 있음). 단일 과세방식은 특히 농산물과 같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교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4-1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분포(1998년)

세율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0 %	종자	종자	종자	종축, 수정란		
1 %				양모		면
2 %				원피, 누에고치		커피와코코아두(복지않음), 아마
3 %	귀리, 메밀			돈지, 우지	팜유, 야자유 당밀	면실, 사탕무당 사탕수수당
5 %	밀, 보리, 옥수수 쌀, 대두, 곡 물가루(밀/쌀/ 옥수수/보리), 박류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8 %	밀/옥수수/감 자/고구마 전 분		과수요목	말, 종마, 의약품제조용 동물성생산물 (우황, 사향 등)	대두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마가린, 옥수수유, 당류, 두부 식물성유지, 설탕과자 캔디류, 면류, 라면 초코렛초코렛과자 콘칩, 콘플레이크, 빵 인스턴트면류, 케첩 조제식료품, 비스킷, 쿠키, 토마토페이스트 인스턴트커피, 장류, (간장/된장/고추장) 마요네즈, 기타음료 인삼음료, 과즙음료	구근류, 계피 기타 산 식물 식물의 잎, 가지 커피(볶음) 곡물의 질, 껍질
10 %						주정(조주정)
20 %	매니옥 고구마	생강		소, 가금류, 양 돼지, 말지분유 유장, 천연꿀, 녹용	유당 조제저장처리버섯 조제저장처리두류	인삼, 인삼정 인삼엑즙, 엑스 있담배
25 %					해바라기씨유	절화류 해바라기씨
30 %	맥주맥, 맥아 유채, 호프 채두류(녹두, 팔 완두, 강남콩등) 채두류 종자	감자, 양배추, 배 추, 당근, 무, 오이류, 채두류, 버섯류, 호박, 냉동채소, 건조채소, 건채두류 일시저장처리채소	코코넛, 아몬드 잣, 헤즐넛 은행, 바나나 파인애플, 일시저장처리과실	쇠고기, 양고기 가금육, 조란 식용설육,	유채유, 소시지 조제저장처리육 조제저장처리채소 채소주스, 수프, 브로드, 백주, 포도주, 위스키, 소주, 약주	
40 %	낙화생, 참깨 들깨			밀크와크림 전지분유, 치즈 버터밀크, 버터	참기름, 들기름	녹차, 홍차 필터담배
50 %		토마토, 양파 마늘, 상치 고추류	호도, 밤, 감귤 오렌지, 포도 수박, 멜론, 배 사과, 복숭아 자두, 감 건조과실	돼지고기	조제저장처리토마토 오렌지/포도/ 사과/복숭아/ 딸기주스	

자료: 농림부, 농림산물 품목분류(1998. 1)에서 정리.

표 4-2 주요국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분포(1998년)

국 가	세율단계	세 율 분 포 (%)	관 세 종 류
한 국	12단계	무세, 1, 3, 5, 7, 8, 10, 20, 25, 30, 40, 50	종가세
미 국	94단계	무세, 0.1~25(소수 첫째자리 까지 세분), 28, 31.5, 139.5, 173.4, 350 등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일 본	50단계	무세, 2~20(소수점 이하까지 세분), 25, 28, 30, 35, 40, 50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E U	34단계	무세, 2~26%(일부 소수점 이하 존재), 30, 32, 42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년)에서 정리.

2. 양허관세율 구조

양허관세는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의 일종으로 GATT 양허관세, ESCAP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란 일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여 당해조약의 유효기간중에 협정된 세율을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적용순서에서 협정세율은 국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수많은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허관세율은 관세율의 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 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종가종량선

택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본관세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종가종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 사이에 분포하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³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

³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가 우려된다(부표 1).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우리 나라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볼 수 있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사료와 가공용 수요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일쥬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3.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3.1. 관세율 분포로 본 역관세

원료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비교하여 관세의 누진성(Escalation)이나 역누진성(또는 역관세, Deescalation)을 조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료농산물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특성상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역관세체계로 운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기본관세율이나 양허관세율 분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관세율 분포를 제품별로 비교해 본다는 것은 역관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기본관세와 양허관세의 분포를 중심으로 역관세의 가능성을 판단한 후 역관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실효보호율 추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한다.

곡물류는 옥수수, 대두, 밀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5%로 낮은 반면 그 가공품들은 8%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어 곡물 가공산업은 일단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허관세율은 밀을 제외하고는 곡물 가공품과 역관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일부 과실류와 그 가공품은 기본관세율의 경우 원료와 1차가공품은 단일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차가공품은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허관세율은 과실류 1차가공품 및 2차가공품 모두 역관세 구조를 나타낸다. 그밖에 기본관세율이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밀크(크림)와 아이스크림, 배추와 김치 등이 있다. 육류와 육가공품은 단일관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의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표 4-4).

따라서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역관세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중심세율 8%를 적용 받는 가공식품 가운데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은 역관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유제품과 과채류, 견과류 등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원료에 비해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게 나타나 역관세체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곡물류는 원료 농산물의 기본관세율이 중심세율 이하

로 책정되어 있어 곡물류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역관세 가능성이 낮다. 주요 원료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이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는 육류와 육가공품, 과일과 과일 가공품 등도 역관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표 4-1).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의 역관세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많은 품목들에서 발견된다. 곡물류의 경우 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곡물이 곡물가공품과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실가공품은 1차가공품 및 2차가공품 모두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표 4-3).

표 4-3 농산물 및 식품의 양허관세율 분포(1998년)

관세율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0~10%	밀(사료/제분), 박류	종자	종자	가금류, 종계, 원피, 동물정액	과즙음료	
11~20%	밀(듀우럼), 밀가루, 귀리		과수묘목	말, 우지, 의학 용동물성생산물	인삼타브렛 인삼분	산식물
21~30%	유채	배추, 양배추 오이류 채두류 냉동채소	은행	종돈, 돼지 돼지고기, 돈지 닭고기 조란(닭이외) 종란	낙화생유, 대두유, 팜유, 옥수수유, 당 류, 소시지, 마가린, 빵, 캔디류, 비스킷 쿠키, 설탕과자, 초코렛, 조제식료품 코코아페이스트	구근류 인삼정
31~40%		건채두류		치즈	해바라기씨유, 초코렛및초코렛과자 토마토페이스트 조제저장처리채소 조제저장처리채두류	녹용 절화류 커피(볶음)
41~50%	호프	버섯류 토마토 당근, 무	포도, 사과 파인애플, 호도 딸기, 자두 레몬과라임 아몬드, 코코넛	쇠고기 밀크와크림 냉동크림 조란(닭) 소	들기름 포도/사과주스 연유, 유채유	
51~60%	전분(밀)	들깨 건조채소	수박, 멜론		조제저장처리(돈육) 오렌지주스, 면류 인스턴트면류, 장류 케첩, 인스턴트커피 조제저장처리과실 채소주스	커피(안볶음)
61~70%			배, 복숭아 단감		레몬/복숭아/딸기주 스, 두부	홍차 잎담배
71~80%			오렌지, 감	유장	조제저장처리(닭고기 /쇠고기), 포도주, 맥주	
81~90%						필터담배
91~100%			바나나	버터밀크, 버터		
101~200%		양파	감귤			
201~300%	전분(옥수수/ 고구마), 낙화생	고추류	밤	탈지분유, 전지 분유, 천연꿀		인삼류 (수삼/백삼)
301~400%	겉보리, 옥수수 (종자포함)	감자(종자포 함), 마늘				
401~500%	고구마, 팥 전분(감자)	생강				
501~600%	대두, 맥주맥, 귀리(종자)					녹차
601~700%	녹두, 녹두종자 참깨, 옥수수 (팝콘용)		대추		참기름	
701~800%						
801~900%	기타곡물의 분					홍삼
901~1000%	매니옥					

자료: 농림부, 농림산물 품목분류(1998. 1)에서 정리.

표 4-4 가공 단계별 관세율 현황(1998년)

단위: %

원 료 농산물	관 세 율		1차 가공	관 세 율		2차 가공	관 세 율	
	기본	양허		기본	양허		기본	양허
밀	5	6.7	밀 가 루	5	19.7	국수, 라면 인스턴트면	8	57.6
옥 수 수	5	350.2	옥수수유 콘플레이크	8	26.8 38.2			
대 두	5	519.4	대 두 유 두 부	8	20.2 64.2			
사 과	50	48.0	사과쥬스 (농축)	50	48.0	과즙음료	8	9.6
오 렌 지	50	83.0	오렌지쥬스 (농축)	50	57.6	오렌지쥬스	50	57.6
포 도	50	48.0	포도쥬스 (원료)	50	48.0	과즙음료 포도쥬스	8 50	9.6 48
토 마 토	50	48.0	토 마 토 페이스트	8	33.6	토마토케첩	8	57.6
코 코 아	8	25.9	코코아분말	5	25.9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8	34.5
커 피 두	2	57.6	커피(볶음)	8	38.8	인스턴트 커 피	8	57.6
감자(기 타)	30	324.4	감자전분	8	485.6			
배 추	30	28.8	김 치	20	30.2			
밀크와크림	40	42.8	치즈(신선)	40	38.4	가공치즈	40	38.4
밀크와크림	40	42.8	냉 크 림	40	42.8	아이스크림	8	30.2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3	21.4	당류(기타)	8	25.9	캔 디 류	8	25.9
생 돈	20	21.4	돼지고기 (냉장,냉동)	50	29.5*	통조림,수프 조제저장	30	52.2*
육 우	20	42.7	쇠 고 기 (냉장,냉동)	30	42.7*	통조림,수프 조제저장	30	76.8*
육 계	20	10.7	닭 고 기 (냉장,냉동)	30	25.4*	통 조 림 조제저장	30	76.8*

* 부위별, 절단여부에 따라 다수 품목으로 구분됨. 양허세율은 다수 품목의 단
순평균임.

자료: 농림부, 농림산물·품목분류(1998. 1)에서 정리.

3.2. 실효보호율

3.2.1. 실효보호율 추정방법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많고 이러한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서로 다를 경우 명목관세율(또는 명목보호율)에 의해서 역관세를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관세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효보호율의 개념이 이용되고 있다. 명목보호율이란 어떤 재화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국내 가격과 국경가격과의 차이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비관세장벽이 없고 관세장벽만 있으며 관세가 예외 없이 부과된다면 명목보호율은 관세율과 같아지게 된다.

그러나 생산요소로 중간재(원료 포함)가 사용되고 있고 관세가 중간재에도 동시에 부과된다면 명목보호율은 실제적인 보호효과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만큼 생산비가 상승하므로 중간재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그 만큼 보호효과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는 중간투입물을 고려하면 실효보호율 추정은 한층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명목보호율 추정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 관세부과의 예외와 쿼터, 수입허가제, 각종 특별법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법정관세율보다는 실적관세율 또는 잠재관세율 등이 더 적절한 명목보호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효보호율 추정에 기초가 되는 명목보호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다양한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추

정한 결과가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완제품과 중간재(원료) 수입에 있어서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 초과물량의 수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효보호율은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주어진 보호체제로 인하여 그 산업의 산출물을 한 단위 생산함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관세 부과 이전의 부가가치를 VA^*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1) \quad VA_j^*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 P_j^* (1 - \sum_i a_{ij}^*) \quad i, j = 1, 2, \dots, K
 \end{aligned}$$

여기서, *는 관세 부과 이전의 상황, Q_j^* 는 j 상품의 생산량, P_i^*, P_j^* 는 각각 i 상품과 j 상품의 가격, Q_{ij}^* 는 Q_j^* 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i 상품의 소요량, a_{ij}^* 는 j재를 1원어치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i 상품의 투입액, K는 교역재의 수를 나타낸다.

국내가격하에서 j 상품의 단위당 부가가치는 국내가격이 관세를 부과한 후의 가격이므로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투입-산출 체계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Q_{ij}/Q_j = Q_{ij}^*/Q_j^*$ 이고 $P_j = P_j^*(1 + t_j)$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 부과후의 부가가치(VA)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2) \quad VA_j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 P_j^* (1 + t_j) [1 - \sum_i \frac{Q_{ij}^* P_i^* (1 + t_i)}{Q_j^* P_j^* (1 + t_j)}] \\
 &= P_j^* (1 + t_j - \sum_i a_{ij}^* (1 + t_i)), \quad i, j = 1, 2, \dots, K
 \end{aligned}$$

여기서, t_i, t_j 는 각각 i 상품과 j 상품의 명목보호율을 나타낸다.

식 (1)과 식 (2)에서 실효보호율 Z 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3) \quad z_j &= \frac{P_j^* (1 + t_j - \sum_i a_{ij}^* (1 + t_i))}{P_j^* (1 - \sum_i a_{ij}^*)} - 1 \\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end{aligned}$$

3.2.2. 비교역 중간투입재의 처리⁴

식 (3)에 의한 실효보호율은 완제품 교역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모두 교역이 가능한 재화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교역재가 존재하고 이러한 비교역재의 존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식 (3)은 한층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비교역재의 처리 방법은 크게 Corden과 Balassa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⁴ 본절은 유정호 등(1993)을 따랐으며 Corden(1971)과 Balassa 등(1971)을 참고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의 정의와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다. Balassa 방식은 어느 제품의 부가가치를 그 제품의 부가가치에 국한시키도록 중간투입물의 부가가치를 뺄 수 있는 한 완전히 제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반면 Corden 방식은 어느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교역 중간재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도 그 제품의 부가가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Balassa 방식에 의한 부가가치가 Corden 방식에 의해 계산된 부가가치보다 작게 나타난다.

Corden의 실효보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j 상품 한 단위를 국내가격하에서 생산할 때의 부가가치 VA_j^C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4) \quad VA_j^C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K+1}^{K+N} \sum_i \frac{Y_{im}}{Q_m} \cdot Q_{mj} \cdot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frac{Q_{mj}}{Q_j} \cdot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sum_i \frac{Y_{im} P_i}{Q_m P_m} \cdot \frac{Q_{mj} P_m}{Q_j P_j}]
 \end{aligned}$$

여기서, P_i (P_j)는 재화 i 또는 j 의 국내가격, Y_{im}/Q_m 는 비교역재 m 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직접·간접으로 소요되는 교역재 i 의 물리적 양, $Y_{im} \cdot Q_{mj}/Q_m$ 는 m 을 통해 j 재에 투입되는 i 의 양을 나타낸다.

식(4)를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 \quad VA_j^C = P_j (1 - \sum_i a_{ij} - \sum_m \sum_i r_{im} a_{mj})$$

여기서 $Q_{ij} P_i / Q_j P_j = a_{ij}$, $Y_{im} P_i / Q_m P_m = r_{im}$, $Q_{mj} P_m / Q_j P_j = a_{mj}$

를 나타낸다.

상품 j의 물리적 단위 하나를 국경가격하에서 생산할 때의 부가가치 $VA_j^*{}^C$ 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의 가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6) \quad VA_j^*{}^C &= \frac{1}{Q_j^*} (Q_j^* P_j^* - \sum_j Q_{ij}^* P_j^*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Q_{mj}^* \cdot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frac{Q_{mj}^*}{Q_j^*} \cdot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frac{Q_{mj}^*}{Q_j^*} \cdot \frac{P_i^*}{P_j^*}]
 \end{aligned}$$

여기서 *는 관세부과 이전의 상태를 나타낸다.

관세부과 이전과 관세부과 이후에 어느 기업의 투입산출계수는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투입산출계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Q_{ij}^* / Q_j^* = Q_{ij} / Q_j$, $Q_{mj}^* / Q_j^* = Q_{mj} / Q_j$ 그리고 $Q_{im}^* / Q_m^* = Q_{im} / Q_m$ 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Y_{im}^* / Q_m^* = Y_{im} / Q_m$ 을 의미하고 여기에 $P_i = P_i^* (1 + t_i)$ 의 관계를 적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Corden의 실효보호율 추정을 위한 부가가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7) \quad VA_j^*{}^C &= P_j^* [1 - \sum_i \frac{Q_{ij}}{Q_j} \frac{P_i / (1 + t_i)}{P_j / (1 + t_j)} - \sum_m \sum_i \frac{Y_{im}}{Q_m} \frac{P_i / (1 + t_i) Q_{mj} P_m}{P_m Q_j P_j / (1 + t_j)}] \\
 &= P_j^* [1 - \sum_i a_{ij} \frac{1 + t_j}{1 + 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 + t_j}{1 + t_i}]
 \end{aligned}$$

식 (5)와 식 (7)에서 Corden의 실효보호율 z_j^C 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begin{aligned}
 (8) \quad 1 + z_j^C &= \frac{VA_j^C}{VA_j^{*C}} \\
 &= \frac{1 - \sum_i a_{ij} - \sum_m \sum_i r_{im} a_{mj}}{\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1+t_i}}
 \end{aligned}$$

이 식은 j재의 생산액으로부터 비교역재의 투입액 전체($\sum_m a_{mj}$)를 빼지 않고 그 일부인 $\sum_m \sum_i r_{im} a_{mj}$ (이는 비교역재 투입액보다 작다.)만을 뺀 나머지를 j재의 부가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산업 j에 대한 Corden의 실효보호율은 j재 산업에 소요되는 비교역재의 생산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비교역 생산요소들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게 된다.

Balassa 방법을 이용한 실효보호율은 어느 상품 j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보호만을 반영한다. 중간재 가운데 교역재 가격 상승률은 명목보호율과 같지만 비교역재의 상승률은 알 수 없다. Balassa는 여기서 비교역재의 생산에 직접·간접으로 투입되는 교역재가격의 상승만이 그 비교역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가정한다. 어느 교역재에 대한 보호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교역 투입재의 부가가치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이다.

비교역재 m의 국내 및 국경가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quad P_m = \sum_i \frac{Y_{im}}{Q_m} P_i + \frac{V_m}{Q_m} \quad (\text{국내가격})$$

$$(10) \quad P_m^* = \sum_i \frac{Y_{im}^*}{Q_m^*} P_i^* + \frac{V_m^*}{Q_m^*} \quad (\text{국경가격})$$

여기서, V_m 은 m 재를 Q_m 단위 생산할 때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총액, V_m/Q_m 은 물리적 단위 하나의 생산에 따르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Balassa의 가정 가운데 $V_m/Q_m = V_m^*/Q_m^*$ 이라는 것과 물리적 I-O체계가 불변이라는 가정은 $Y_{im}^*/Q_m^* = Y_{im}/Q_m$ 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P_m^* 와 P_m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1) \quad P_m^* &= \sum_i \frac{Y_{im}}{Q_m} \frac{P_i}{1+t_i} + \frac{V_m}{Q_m} \\ &= P_m \left(\sum_i \frac{Y_{im} P_i}{Q_m P_m} \frac{1}{1+t_i} + \frac{V_m}{Q_m P_m} \right) \\ &= P_m \left(\sum_i r_{im} \frac{1}{1+t_i} + r_{vm} \right) \end{aligned}$$

식 (9)~(11)을 이용하여 국내가격하에서의 부가가치를 Balassa 방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2) \quad VA_j^B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 Q_{mj} P_m)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frac{Q_{mj}}{Q_j} P_m \\ &= P_j \left(1 - \sum_i \frac{Q_{ij} P_j}{Q_j P_j} - \sum_m \frac{Q_{mj} P_m}{Q_j P_j} \right) \\ &= P_j \left(1 - \sum_i a_{ij} - \sum_m a_{mj} \right) \end{aligned}$$

실효보호율은 국내가격하에서의 부가가치와 국경가격하에서의 부가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경가격하에서 j재의 부가가치를 Balassa 방법으로 표현하여 식 (12)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begin{aligned}
 (13) \quad VA_j^{*B}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 Q_{mj}^* P_m^*)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frac{Q_{mj}^* P_m^*}{Q_j^* P_j^*}] \\
 &= P_j^* (1 - \sum_i \frac{Q_{ij}}{Q_j} \frac{P_i/(1+t_i)}{P_j/(1+t_j)})
 \end{aligned}$$

$$\begin{aligned}
 &- \sum_m \frac{Q_{mj}}{Q_j} \frac{P_m}{P_j/(1+t_j)} (\sum_i r_{im} \frac{1}{1+t_i} + r_{vm})] \\
 &= P_j^* [1 - \sum_i a_{ij} \frac{1+t_j}{1+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t_j}{1+t_i} \\
 &\quad - \sum_m r_{vm} a_{mj} (1+t_j)]
 \end{aligned}$$

식 (12)와 식 (13)에서 Balassa 방법에 의한 실효보호율 z_j^B 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4) \quad 1 + z_j^B &= \frac{VA_j^B}{VA_j^{*B}} \\
 &= \frac{1 - \sum_i a_{ij} - \sum_m a_{mj}}{\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1+t_i} - \sum_m r_{vm} a_{mj}}
 \end{aligned}$$

3.2.3. 산업별 명목보호율 추정

완전한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교역재의 가격이 국내외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외거래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교역재들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지 않다. 국경도착가격 또는 국경통과가격을 국경가격이라 하면, 명목보호율이란 국내가격이 국경가격을 초과하는 비율 또는 차이를 뜻한다. 관세장벽만이 존재하면 국산 교역재의 명목보호율은 법정관세율과 같다.

그러나 관세부과의 예외와 쿼터, 수입허가제, 각종 특별법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법정관세율보다는 실적관세율 또는 잠재관세율 등이 더 적절한 명목보호율이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효보호율 추정에 기초가 되는 명목보호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 추정에서는 실적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간주하였으며 가공식품업체의 실사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에 있어서는 실적관세율 추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을 이용하였다.

실적관세율은 수입상품 가운데 수출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관세수입을 과세전 수입액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잠재관세율이 보다 정확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추정에 어려움이 많다. 잠재관세율이란 주어진 상품의 국내가격이 국경가격을 초과하는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가격조사를 통해 구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명목보호율과 개념이 같다. 여기서 국내가격이란 간접세 부과 이전의 국내생산자의 출고가격을 뜻하고 국경가격이란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관세 혹은 수입상품세 부과 이전의 CIF(보험료·운임 포함)가격을 의미한다.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법정관세율은 산업연관분류 기준에 속하는 각각의 단위에 속하는 상품

들의 HS 단위별 관세율을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균에 의한 법정관세율은 수출입의 중요도와 수출입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명목보호율의 추정은 이상 설명한 세가지 법정, 실적, 잠재 관세율 중 국내와 국경가격의 차이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내와 국경가격의 차이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 차이는 주어진 상품을 얼마나 수출 혹은 수입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상품별로 수출비중과 수입의존도에 명목보호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명목보호율의 선정기준

- ① 잠재관세율이 법정관세율보다 높을 경우: 주어진 산업의 산출물의 국내가격이 국경가격의 초과하는 비율이 법정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어떤 비관세 규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때의 명목보호율은 잠재관세율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법정관세율 > 잠재관세율 > 실적관세율인 경우: 수입 가운데 관세면세 혜택이 많아서 법정관세율이 국내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산업의 산출물의 명목보호율은 잠재관세율이나 실적관세율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수입규제가 있으면 잠재관세율을 수입규제가 없으면 실적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실적관세율 > 잠재관세율 > 零인 경우: 수입품과 국산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 ④ 잠재관세율 < 零인 경우: 잠재관세율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국내가격이 국경가격보다 싸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비중이

높고 수입가격이 국내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면 실적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택하고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는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품질차이가 국내가격이 국경가격보다 싼 이유로 보고 명목보호율을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3.3.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3.3.1. 추정자료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을 산업연관표와 식품업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 추정은 농업 및 식품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산업별 분류에 의한 추정으로 제품별 실효보호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의 교역은 제품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은 제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산업별 대분류에 의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산업 사이에 논란이 되어 온 역관세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결과에 의해 제품별 실효보호율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업연관표는 산업간의 연계성을 나타내고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세체계 또는 관세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세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유정호 외(1993. 6), 최낙균 외(1993. 1)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산업연관표의 특성을 이용하여 Corden 방식과 Balassa 방식 등 복잡한 중간투입재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의 연구는 최종재 가운데 교역재만을 선정하여 이들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민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산업간의 관세

을 구조와 관세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개별 기업 또는 제품 수준의 관세정책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를 토대로 역관세의 가능성이 높은 고차가공품(가공도가 높은 식품)을 선정하여 제품별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은 농산물과 식품산업에 중점을 두어 1995년도 산업연관표의 402부문표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명목보호율은 실적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실적관세율은 대부분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로 국내 수급조절용 및 수출용 원자재 등 관세할당에 의한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실적관세율이 0%인 벼, 육우, 낙농의 경우 수입실적이 없거나 농업용 자재로 0%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적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들 품목들이 0% 관세율로 자유롭게 수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벼의 경우 수입제한의 벽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 가격차를 명목보호율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목보호율과 실적관세율이 다른 경우는 정도의 차이일뿐 어느 품목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실적관세율을 명목보호율의 하나의 예로 선택한 점을 고려하여 벼의 국내외 가격차를 명목보호율로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일부 품목의 실효보호율은 실제 보호율보다 과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2. 선행연구 결과

최낙균 외(1993)는 198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22개 부문별 실효보호율을 Balassa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22개부문의 실효보호율 평균은 1.5%로 추정되었다. 농림수산품의 명목보호율은 3.8%, 실효보호율은 7.5%로 계산되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벼, 맥

류 및 잡곡, 비식용작물, 수산물은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야채, 과일, 기타식용작물, 축산, 양잠, 수산어획, 수산양식 등은 명목보호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벼의 경우는 실효보호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부문의 명목보호율은 31.9%, 실효보호율은 18.6%로 나타났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육류 및 육가공품, 수산가공품, 정미, 정맥, 빵·과자 및 면류, 기타식료품, 배합사료, 주류가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낙농품, 과일 및 야채가공품, 제분, 제당, 조미료, 청량음료, 연초 등은 명목보호율보다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음(-)으로 나타난 품목은 수산가공품, 정미, 정맥, 빵·과자 및 면류, 기타식료품, 배합사료, 주류 등이다.

유정호 외(1993)는 19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22개 부문별 실효보호율을 Corden방식과 Balassa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농림수산품의 명목보호율 평균은 97%, 실효보호율 평균은 Corden 방식 209%, Balassa 방식 295%로 추정되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야채, 비식용작물, 수산물의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벼, 맥류 및 잡곡, 과일, 기타식용작물, 축산, 양잠, 수산어획, 수산양식 등의 실효보호율은 명목보호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음(-)으로 나타난 품목은 농업서비스 부문이다.

음식료품부문의 명목보호율 평균은 83%, 실효보호율은 평균은 Corden 방식 -40%, Balassa 방식 12%로 나타났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두 방법 모두 대부분 품목에서 음(-)의 실효보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높게 나타난 품목은 제당과 연초 정도이다. 따라서 가공식품 부문의 실효보호율은 대부분 명목보호율보다 낮고 음(-)의 보호율을 나타내 역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가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농림수산

부문은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가공식품 부문은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크기와 부호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명목보호율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명목보호율의 추정은 실효보호율 추정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3.3.3.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가. 농 업

농업부문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결과는 모든 중간재를 교역재라고 가정한 전통적 방식과 Corden 방식, Balassa 방식 사이에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의 크기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대체로 전통적 방식에 의한 추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alassa 방식이 가장 낮았다. 전통적 방식의 경우 실효보호율의 크기가 산업별로 -14.4에서 +51.1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Balassa 방식에 의한 추정치는 -91.6에서 +64.0까지 분포되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실효보호율이 낮거나 음(-)으로 나타난 부문은 벼, 낙농, 육우, 양돈, 보리, 밀, 잡곡, 종자산업 등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목보호율로 사용한 실적관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완제품의 명목보호율이 낮은 경우 중간재의 명목보호율이 완제품보다 낮지 않을 경우 실효보호율은 낮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위 품목들의 명목보호율을 실적관세율로 사용할 경우 중간 투입재의 명목보호율이 8% 중심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아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산업은 도축육, 정맥, 채소류,

과실류, 유지작물, 잎담배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명목보호율도 높다. 도축육은 육우 산업의 실효보호율이 음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료곡물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정미는 비관세장벽이 유지되고 있는 부문으로 명목보호율을 실적관세율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명목보호율로 적용되어야 하나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적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국내외 가격차를 명목보호율로 적용할 경우 정미부문의 실효보호율은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 가공식품 산업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는 농업부문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 추정방법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den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효보호율의 범위는 -9.2%에서 +409.8%로 매우 크다. 유정호 외(1993)의 추정결과도 가공식품 산업간의 실효보호율 편차가 +58.4 ~ -346.6(관측실효보호율 기준)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효보호율이 높은 산업은 명목보호율도 높게 나타났다. 명목보호율이 10%를 넘는 여덟 개 산업에서 실효보호율이 17.3~409.8%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가운데 국수류의 실효보호율이 가장 높았다. 국수류는 조정관세 부과로 완제품의 관세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유제품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의 두 배를 넘는다. 그 이유는 축산물 완제품에 대한 높은 명목보호율과 사료곡물 등 투입재의 낮은 관세율 때문이다. 과실 및 채소가공품 등 원료 농산물과 완제품의 관세가 동일 수준인 가공식품은 기타 투입물의 관세가 낮아 실효보호율

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표적인 품목인 과일 농축액 및 채소 가공품(저차가공품)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완제품이 아닌 저차 가공 상태의 과일 및 채소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료산업은 역관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가공도가 높은 식품류는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과와 제빵, 장류(소스), 당류, 식용유 등의 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Balassa 방식에 의한 추정이 Corden 방식에 의한 추정보다 실효보호율 계수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역관세 구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제과와 과즙 및 채소음료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제품별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 공통된 사항은 명목보호율이 높은 산업에서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정책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관세정책을 통해 어느 산업의 실효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투입재의 관세를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투입물의 관세 조정을 수반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표 4-5 주요 농산물의 실효보호율

단위: %

구 분	ERP	ERP-C	ERP-B	실적관세율	기본관세율
벼	-0.3	-0.4	-3.4	0	5.0
정 미	5.1	-0.01	-71.1	0.3	5.0
보 리	3.8	3.1	-0.5	3.3	5.0
정 맥	34.2	19.8	2.6	6.2	5.0
밀	3.3	2.1	-5.4	2.8	5.0
잡 곡 류	1.3	0.9	-2.7	1.5	3.0
채 소 류	21.9	20.6	19.6	17.8	30.0
과 실 류	51.1	50.2	64.0	40.0	50.0
콩 류	7.7	7.2	5.6	6.6	30.0
감 자 류	10.0	6.6	4.4	8.7	30.0
유지작물	16.9	16.3	15.1	15.3	3.0~40.0
약용작물	6.3	5.9	4.5	5.8	8.0
기타식용작물	3.4	3.1	0.8	3.1	-
섬유작물	3.8	3.6	2.1	3.6	-
잎 담 배	24.5	23.1	21.8	19.3	20.0
화훼작물	12.0	10.2	5.1	9.5	8.0~25.0
종자 및 묘목	2.0	1.4	-6.6	1.9	0~8.0
기타비식용작물	3.8	2.1	-12.8	2.2	-
도 축 육	174.6	56.1	23.5	18.3	30~50
낙 농	-6.0	-4.2	-15.4	0	-
육 우	-14.4	-8.1	-91.6	0	20.0
양 돈	-4.0	-1.9	-26.7	3.4	20.0
가 금	7.4	3.2	-21.3	4.6	20.0

주: ERP는 모든 중간투입재가 교역재라 가정하고 계산한 실효보호율, ERP-C는 Corden 방식의 실효보호율, ERP-B는 Balassa 방식의 실효보호율을 각각 나타낸다.

표 4-6 주요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

단위: %

구 분	ERP	ERP-C	ERP-B	실적관세율	기본관세율
육가공품	24.9	17.3	1.5	13.8	30.0
우 유	36.9	9.6	-36.2	8.3	40.0
유 제 품	164.0	97.7	119.9	47.9	40.0
아이스크림	-22.0	-9.2	-31.0	0.9	8.0
제 분	-5.8	-3.7	-24.4	0.7	5.0
정 제 당	-0.4	-0.7	-19.2	2.3	3.0
전 분	59.3	42.1	28.2	13.4	8.0
빵 및 곡분과자	-3.7	-1.9	-20.8	2.1	8.0
설탕과자	5.9	4.4	-9.8	5.5	8.0
국 수 류	231.2	409.8	261.9	62.3	8.0
장 류	-4.9	-3.0	-18.6	2.1	8.0
식물성유지및식용유	-1.1	-0.3	-19.0	4.5	8~40
과실 및 채소가공품	94.9	70.9	82.0	37.9	8~50
커피 및 차류	8.9	6.1	-14.0	5.6	8~40
인삼식품	49.5	36.1	23.2	16.7	20.0
누룩 및 맥아	46.1	44.1	39.1	13.2	8~30
두 부	12.8	9.2	-1.9	7.9	8.0
청량음료	47.6	36.4	22.1	24.5	8.0

주: ERP는 모든 중간투입재가 교역재라 가정하고 계산한 실효보호율, ERP-C는 Corden 방식의 실효보호율, ERP-B는 Balassa 방식의 실효보호율을 각각 나타낸다.

3.3.2. 제품별 실효보호율

관세율 분포를 중심으로 판단한 역관세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제품별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과실류를 원료로 한 과즙음료, 건과류와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건과류,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는 과자류 등 21개 제품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 주요 제과업체 및 식품업체로 L1, L2, O, D, N, G 등 6개 회사이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명목보호율은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명목보호율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국내외 가격차 변화가 심해 본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동안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일부에서 원료농산물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보호율도 추정하였으나 현실성이 낮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추정한 21개 제품의 실효보호율은 15개 제품에서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난 제품은 캔디, 초콜릿, 배음료, 포도음료(C, D), 아이스크림, 딸기음료, 커피메이트 등으로 앞에서 검토된 명목보호율 구조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실효보호율과 명목보호율이 비슷한 제품은 새우칩, 쿠키, 홍차음료 등으로 명목보호율이 완제품보다 낮거나 동일한 원료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효보호율은 일부 과즙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공식품의 양허관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공식품의 명목보호율은 기본관세율을 사용하고 원료농산물의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면 14개 제품이 음(-)의 실효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료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 분포를 통한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의 역관세 가능성은 실효보호율 추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비록 일부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이나 관세율 분포에서 역관세의 가능성이 나타난 품목들 대부분이 실제로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효보호율이 추정되지 않은 다른 가공식품의 역관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표 4-7 가공식품 제품별 실효보호율 *

단위: %

보호율 품 목	기본세율	양허세율 (1998)	실 효 보 호 율			
			기본/기본	양허/기본	기본/양허	양허/양허
캔 디	8.0	25.9	-6.2	46.0	-30.9	21.3
껌	8.0	25.9	3.1	55.4	-9.0	43.2
초코렛과자	8.0	34.5	-17.5	59.8	-44.5	32.8
아이스크림	8.0	30.2	-22.2	42.6	-85.7	-20.9
새우칩(과자)	8.0	25.9	6.8	59.0	-17.7	34.5
초코칩쿠키	8.0	34.5	7.3	84.6	-3.1	74.2
케 칩	8.0	57.6	3.3	125.7	-24.0	98.3
홍차 음료	8.0	34.5	7.7	47.8	7.2	47.3
배 음 료	8.0	9.6	-6.8	-4.3	-8.4	-5.9
캔 커 피	8.0	9.6	7.1	73.5	-3.2	63.2
포도음료 A	50.0	48.0	67.5	62.7	69.5	64.7
포도음료 B	50.0	48.0	59.2	55.4	60.5	56.7
포도음료 C	8.0	9.6	-5.4	-2.4	-6.6	-3.5
포도음료 D	8.0	9.6	3.4	6.2	-8.7	-6.0
오렌지음료 A	57.6	57.6	63.6	63.6	63.6	63.6
오렌지음료 B	57.6	57.6	62.7	62.7	62.7	62.7
오렌지음료 C	57.6	57.6	74.5	74.5	72.2	72.2
파인애플음료	50.0	64.2	75.0	105.9	66.7	97.5
당근쥬스	8.0	9.6	0.3	2.9	-9.9	-7.2
딸기쥬스	8.0	9.6	3.2	5.9	-7.5	-4.7
커피크리머	8.0	57.6	0.7	120.0	-14.1	105.1

*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인 경우가 많아 원료와 완제품 모두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된(기본/기본으로 표시)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주: 1) 양허세율이 없는 경우는 기본세율을 양허세율로 적용하였음.

2) 기타로 처리된 중간재는 기본세율, 양허세율 모두 8%로 계산하였음.

3) 기본/기본은 완제품과 원료에 적용된 명목관세율이 모두 기본관세율을 의미하고 기본/양허는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며 원료에 적용된 명목관세율은 양허관세를 의미함.

제 5 장

기본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1. 기본관세의 단계와 종류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기본관세율은 0%에서 50%까지 12 단계로 되어 있다. 기본관세율 10% 이하에서는 세율의 단계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으나 관세가 10%를 넘는 품목들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기본관세율이 10% 이하인 품목들의 관세율 단계는 0%, 1%, 3%, 5%, 7%, 8%, 10% 등 일곱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이 10%가 넘는 품목들은 20%, 25%, 30%, 40%, 50% 등 다섯 단계에 불과하다. 기본관세율이 12단계에 불과한 것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기본관세율이 94단계(종가세 표시 품목에 한정하여 구분하였음)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의 기본관세율은 0%에서 350%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이 50%를 상한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일곱 배나 높은 관세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농산물의 수출국이며 선진국임에 불구하고 우리 나라보다 매우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보호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기본관세율 25%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이용하여 매우 세분된 관세율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관세율 30% 이상에서는 350%에 이르기까지 관세율이 네 단계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특수한 몇몇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기본관세율은 0%에서 50%까지 50단계(종가세로 표시된 기준)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단계는 관세의 산업 보호적 기능을 강조한 누진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기에 용이하다. 20% 이하에서는 소수점 이하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나 기본관세율이 20%를 넘는 품목들은 50%에 이르기까지 여섯 단계로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비해서는 28%와 35% 등 두 단계가 많다.

EU의 기본관세율은 0%에서 42%까지 34단계(종가세 표시 품목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0%에서 25%까지는 소수점 이하까지 관세율을 책정하여 30단계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26% 이상 42% 사이는 네 단계에 불과하다. EU의 기본관세율 상한은 4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관세율 단계를 종가세로 표시된 품목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단계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과세방법까지 고려하면 우리 나라에 비해 한층 더 복잡한 기본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U는 관세율의 단계, 과세방법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세에서 350%의 고율관세까지 관세율 분포폭이 넓으나 주로 25% 이내의 관

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EU도 25%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기본관세의 상한은 EU, 일본 모두 우리 나라와 같이 50% 이하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기본관세를 종가세 한 종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모두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 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표 4-2).

2.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관세율 구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역관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품목들의 관세가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다면 이들 품목은 관세정책으로 인해 심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 가운데 과자류, 아이스크림, 캔디류, 초콜릿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관세율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품목의 관세율을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의 관세율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관세율은 EU, 일본,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커피, 아이스크림, 벌크초콜릿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도 낮아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U와 중국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에 비해 각각 1.5~3.5배, 1.5~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도 10~35%로 우리 나라에 비해 1.2~4.5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

나 아이스크림과 커피 관련제품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사된 가공식품은 모두 8% 중심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균등관세 체계를 나타내고 과세방식도 종가세 하나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국들보다 관세체계가 단순, 명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0%에서 20%까지 차등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관세방식도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기본관세율은 종가세 하나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관세율은 품목별로 10~3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종가세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50%까지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의 기본관세율은 가장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EU의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와 종가종량병과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량세의 경우 수입시기, 배합비율, 중량 등에 따라 동일 품목에서도 세율을 달리하고 있는 품목이 많다. 세율도 최소한 우리 나라의 1.5배 이상 높게 부과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일부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OECD 국가들의 기본관세율을 비교한 것이 <표 5-2>이다. 여기서 비교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캔디, 잼 등 다섯 개 제품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노르웨이뿐이다. 다섯 개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 나라가 8%, 미국이 7.5%, 노르웨이가 7% 등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 OECD 회원국들의 관세율은 12.3%에서 120%까지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15배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다섯 개 제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35.7%로 우리 나라에 비해 4.5배나 높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은 스웨덴(평균 41.0%), 헝가리(74.0%), 폴란드(120.0%), 터키(115%) 등이다. EU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23.5%로 선진국들 가운데에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균 관세율도 각각 31%와 19%에 달한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수출 선진국들의 관세율이 일부 가공식품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야의 산업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1 가공식품의 경쟁국간 관세율 비교(1998년)

단위: %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토마토	2103.20.1000	토마토케첩	8.0	6.5	25.0	30.0	20.0
관련제품	2103.20.2000	토마토소스	8.0	6.5	20.0	30.0	20.0
유 지	2103.90.9010	마요네즈	8.0	6.8	12.8	30.0	20.0
관련제품	1517.10.0000	마아가린	8.0	13.4¢/kg	35.0	40.0	25.0
초콜릿 관련제품	1806.20.1000	BULK 초코	8.0	4.5	28.0	12.0	12%+EA
	1806.31.1000	SHELL 초코	8.0	6.1	10.0	12.0	12%+EA
	1806.32.1000	핀초코	8.0	5.0	10.0	12.0	12%+EA
	1806.90.1000	기타초코	8.0	55.9¢/kg + 6.3%	10.0	12.0	12%+EA
비스켓	1905.30.1000	스위트비스켓	8.0	FREE	24.0	25.0	13%+EA
	1905.90.1040	비스켓, 쿠키 및 크래커	8.0	FREE	24.0	25.0	13%+EA
커피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8.0	10.0	24.0	50.0	30.0
껌	1704.10.0000	츄잉껌	8.0	4.3	30.0	15.0	(1)
빙과류	2105.00.1010	아이스크림	8.0	20.0	28.0	45.0	(2)
	2105.00.1090	기타 아이스크림	8.0	20.0	28.0	45.0	(2)
	2105.00.9010	기타 빙과류	8.0	18.0	35.0	45.0	(2)
	2105.00.9090	기타 빙과류(기타)	8.0	18.0	35.0	45.0	(2)
캔디류	1704.90.2010	드롭프스	8.0	6.1	35.0	15.0	13%+EA
	1704.90.2020	캐러멜	8.0	6.1	35.0	15.0	13%+EA
스낵류	1905.30.2000	와플과 웨이퍼	8.0	FREE	30.0	25.0	13%+EA
	1905.90.1050	미 과	8.0	FREE	35.0	25.0	13%+EA

(1) 8% + Ecu 34.8/100kg

(2) 12% + Ecu 28.0/100kg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년)에서 정리.

표 5-2 OECD 국가들의 제과류 기본관세율 비교(1998년)

단위: %

국 가	껌	캔 디	비스킷	초코렛	아이스크림	평 균
E U	16.5	20.7	28.5	29.6	22.0	23.5
아이슬란드	29.0	13.0	31.0	39.0	76.0	37.6
스웨덴	12.0	38.0	53.0	36.0	66.0	41.0
오스트리아	13.0	13.0	12.0	12.0	13.0	12.6
노르웨이	2.0	6.7	7.6	7.7	10.9	7.0
핀란드	35.0	35.0	16.0	10.0	29.0	25.0
스위스	25.0	25.0	25.0	28.0	50.0	30.6
체코	15.0	15.0	10.0	15.0	34.6	17.9
헝가리	80.0	80.0	80.0	50.0	80.0	74.0
폴란드	105.0	105.0	120.0	135.0	135.0	120.0
미국	4.5	6.3	0.0	6.5	20.0	7.5
캐나다	13.0	13.0	10.0	10.0	15.5	12.3
멕시코	20.0	20.0	10.0	20.0	20.0	18.0
호주	20.0	30.0	35.0	30.0	30.0	31.0
터키	150.0	150.0	75.0	100.0	100.0	115.0
일본	30.0	35.0	24.0	10.0	28.0	25.4
한국	8.0	8.0	8.0	8.0	8.0	8.0
평 균	34.0	36.1	32.1	32.2	43.4	35.7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97 식품의 기본관세율 조정 청원에 대한 재심의 요청」, 1998, p.9에서 재인용.

3. 누진관세체계 비교

조사된 일부 가공식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율 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 구조 분석을 통해 이미 역관세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과 관세율 구조를 비교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가공식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일본과 EU는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원료와 완제품사이의 관세율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세율 누진 정도가 타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표 5-4).

미국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원료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는 품목은 비스킷, 초콜릿(벌크초콜릿 제외), 토마토 관련 제품 등이다. 반면 유지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관련제품은 누진관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품목별로 누진관세와 역관세가 혼재하고 있다. 토마토 관련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 제품, 초콜릿, 비스킷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생산이 많은 원료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유채유와 해바라기씨유의 관세율은 각각 100%와 91.2%로 마요네즈와 마가린의 관세율 각각 30%와 4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당과 유지의 관세율도 35~40%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료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식품 산업은 역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표 5-3 원료와 완제품의 관세율구조 국제 비교(1998년)

단위: %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토마토 관련제품	2103.20.1000	토마토케첩	8.0	6.5	25.0	30.0	20.0
	2103.20.2000	토마토소스	8.0	6.5	20.0	30.0	20.0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	8.0	12.3	20.0	25.0	18.0
	2002.10.0000	조제, 저장처리한전체 나 조각상의 토마토	50.0	12.3	9.6	25.0	18.0
	2002.90.9000	조제, 저장처리한 토마토	50.0	13.2	9.6	25.0	18.0
유 지 관련제품	2103.90.9010	마요네즈	8.0	6.8	12.8	30.0	20.0
	1517.10.0000	마아가린	8.0	13.4¢/ kg	35.0	40.0	25.0
	1514.10.1000	유채유(조유)	30.0	FREE	¥17/kg	100.0	5.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조유)	25.0	1.8¢/kg + 3.6%	¥20.7/kg	91.2	5.0
초코렛 관련제품	1806.20.1000	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8.0	4.5	28.0	12.0	12%+EA
	1806.31.1000	셀초코	8.0	6.1	10.0	12.0	12%+EA
	1806.32.1000	편초코	8.0	5.0	10.0	12.0	12%+EA
	1806.90.1000	기타초코	8.0	55.9¢/ kg + 6.3%	10.0	12.0	12%+EA
	1702.11.1000	유당	20.0	7.6	10.0	35.0	Ecu 21.8/ 100kg
	1805.00.0000	코코아 분말	5.0	0.82¢/kg	12.7	40.0	12.0
	1516.20.2090	기타(정제가공유지)	8.0	9.5¢/kg	4.0	40.0	12.0
커 피 관련제품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	8.0	10.0	24.0	50.0	30.0
	0901.21.0000	커피(볶음/카페인)	20.0	FREE	20.0	35.0	15.0
	0901.22.0000	커피(볶음/디카페인)	20.0	FREE	20.0	35.0	15.0
	3501.10.0000	카세인	20.0	0.39¢/kg	FREE	10.0	2.0
	3501.90.1000	카세인염 및 유도체	20.0	0.39¢/kg	6.4	10.0	13.0

표 5-3(계속)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검 관련제품	1704.10.0000	쥬잉검	8.0	4.3	30.0	15.0	8%+Ecu 25.2/100kg
	2905.44.0000	디-글루시톨	8.0	5.2	20.0	14.0	12%+Ecu 25.2/100kg
	2905.49.0000	기타(자일리톨)	8.0	FREE	4.6	10.0	19.0
	2915.32.0000	초산비닐	8.0	3.8	5.6	9.0	20.0
	3302.10.1000	향료류(식품공업의것)	8.0	1.2	5.3	40.0	27.0
	3824.90.9030	검베이스	8.0	5.0	FREE	12.0	18.0
	3912.39.9000	기타(마이크로크리스 탈렌셀룰로오스)	8.0	4.2	4.6	14.0	19.0
아이스크림 관련제품	2105.00.1010	아이스크림	8.0	20.0	28.0	45.0	12%+Ecu 28.0/100kg
	2105.00.1090	아이스크림(기타)	8.0	20.0	28.0	45.0	12%+Ecu 28.0/100kg
	2105.00.9010	기타빙과류	8.0	18.0	35.0	45.0	12%+Ecu 28.0/100kg
	0802.11.0000	아몬드(미탈각)	30.0	FREE	FREE	30.0	FREE
	0802.12.0000	아몬드(탈각)	30.0	FREE	FREE	30.0	FREE
	0802.21.0000	헤절너트(미탈각)	30.0	8.3¢/kg	10.0	30.0	4.0
	0802.22.0000	헤절너트(탈각)	30.0	15.3¢/kg	10.0	30.0	4.0
	0801.31.0000	캐슈넛(미탈각)	30.0	FREE	10.0	30.0	8.0
	0801.32.0000	캐슈넛(탈각)	30.0	FREE	10.0	30.0	8.0
	0404.10.1000	유장분말	20.0	9.0	35% + ¥500/kg	6.0	1.49%+Ecu 34.4/100kg
	0401.30.0000	후로즌크림	40.0	3.2¢/ℓ	-	25.0	Ecu 89.8 /100kg
	2106.90.9020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8.0	10.0	35%+ ¥799/kg	35.0	25.0
	0404.90.0000	천연밀크 조성분 함유제품	40.0	0.39¢/kg	35%+ ¥470/kg	50.0	Ecu 156.8/ 100kg
	1901.90.2000	밀크와 크림 등의 조제식료	40.0	7.6	35%+ ¥799/kg	25.0	8.0%+Ecu 23.0/100kg

표 5-3(계속)

구 분	HS (10단위)	품 명	국 내 관세율	외 국 관 세 율			
				미 국	일 본	중 국	E U
비스켓 관련제품	1905.30.1000	스위트비스켓	8.0	FREE	24.0	25.0	13%+EA
	1905.90.1040	비스켓, 쿠키 및 크래커	8.0	FREE	24.0	25.0	13%+EA
	0405.10.0000	무염버터	40.0	12.3 ¢/kg	35%+ ¥1159/kg	50.0	Ecu 296.2/ 100kg
	1104.22.0000	커리플레이크	5.0	1.0	20.0	30.0	Ecu 253.0/ton
	1105.20.0000	감자플레이크	8.0		20.0	30.0	19.0
공통으로 첨가된 관련품목	1905.00.0000	바닐라두	8.0	FREE	FREE	15.0	11.5
	1302.20.0000	펙틴질, 펙틴난산염 및 펙틴산염	8.0	FREE	5.0	20.0	14.0
	1302.20.0000	로우커스트두	8.0	FREE	¥160/kg	20.0	6.0
	1302.19.9091	바니라올리오레진 추출물	8.0	FREE	10.0	20.0	3.0
	1302.31.9000	기타(식물성원료에서 얻은청진물맛디크너)	8.0	1.0	¥160/kg	20.0	4.0
	2905.12.1000	1-프로파놀 (프로필알콜)	8.0	10.6	4.6	8.0	18.0
	2905.22.1000	게라니올, 시트로네올 리라늄, 로디놀및네올	8.0	3.0	5.3	10.0	16.0
	2906.11.0000	멘톨	8.0	2.1	22.4	5.0	11.0
	2906.14.0000	테르피네올	8.0	5.7	5.3	10.0	16.0
	2906.19.1000	보르네올	8.0	FREE	5.3	10.0	16.0
	2906.21.0000	벤질알콜	8.0	5.7	5.3	5.0	17.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콜	8.0	FREE	4.6	8.0	13.0
	2909.30.2000	아네톨	8.0	8.4	4.6	8.0	13.0
	2914.50.1000	오이게놈	8.0	FREE	4.6	9.0	18.0

자료: 국별 관세율표(1998년)에서 정리.

표 5-4 일본의 누진관세율 체계

단위: %

산 업	품목수	평균관세율	세율범위	표준편차
기초생산물				
농축산물	373	12.2	0-923.3	67.4
임산물	40	3.3	0-23.8	5.6
목 재	37	0.1	0-4.1	0.7
수산물	134	5.8	0-15	3.8
석탄류	9	0.0	0-0	0.0
원유와 가스	4	0.7	0-2.9	1.4
금 속	28	0.0	0-0	0.0
광 물	84	0.1	0-3	0.4
가공생산물				
식품가공				
1 차가공	32	35.1	0-781.6	136.6
2 차가공	26	36.1	4.3-85.7	17.7
완 제 품	202	64.5	0-709.2	146.3
음 료				
완 제 품	58	26.0	0-90.2	22.1
섬 유 류				
1 차가공	64	12.5	151.3	40.8
2 차가공	1,187	7.5	0-16	2.6
완 제 품	596	9.9	0-17.9	4.2
의 류				
완 제 품	275	12.0	3.4-18.5	3.3
가죽제품				
1 차가공	1	3.4	3.4-3.4	...
2 차가공	86	16.8	0-48.8	16.4
완 제 품	43	12.3	3.2-20.8	6.2
나무제품				
1 차가공	5	0.0	0-0	0.0
2 차가공	114	4.8	0-14	3.8
완 제 품	47	3.7	0-14	3.0
정 유				
1 차가공	9	1.6	0-4.9	2.5
2 차가공	6	1.3	0-4.6	2.0
완 제 품	45	7.9	0-38.2	9.8
고무제품				
1 차가공	2	0.8	0-1.5	1.1
2 차가공	21	1.7	0-3.3	1.1
완 제 품	58	3.1	0-27	5.8
철강제품				
1 차가공	10	1.0	0-5.7	2.1
2 차가공	363	2.9	0-7.6	1.1

자료: 일본의 WTO Trade Policy Review 준비용 내부자료, WT/TPR/S/32, pp.166~168.

제 6 장

외국의 관세제도

1. 일본의 관세제도⁵

1.1. 일본의 관세법

일본의 관세관계제도는 주로 관세법(關稅法), 관세정율법(關稅定率法) 및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 그리고 특별법에 의거 운영되며 WTO 협정 등과 같은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12장 179조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선박의 입출항 절차와 보세제도, 기타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⁵ 관세청의 “일본의 관세행정”(1998. 6.), “일본의 관세율표”, “일본의 WTO 무역정책검토 보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관세청의 “일본의 관세행정”을 많이 인용하였다.

관세정율법은 본문 총41조 및 별표 관세율표와 별표 1 간이세율표 및 별표 2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관세율,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감면, 면제, 환급, 부당염매(덤핑)관세 등 특수관세제도, 수출입 금지품 및 관세율심의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관세율표는 HS 조약에 준거하여 모든 수입물품을 6,700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관세율(기본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간이세율표는 일본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별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와 내국소비세를 합친 간이세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2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는 과세가격의 합계가 10만엔 이하인 우편물을 포함한 소액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통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잠정조치법은 본문 26조와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산업,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적, 잠정적인 관점에서 관세율, 감면여세제도(減免戻稅制度) 및 특혜관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관세정율법의 특례를 정한 것이다. 이들 세율은 기본세율의 잠정적인 특례로 잠정세율이라 하며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2. 일본의 관세정책

1.2.1. 관세정책의 역사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 부흥기의 국제무역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하에 놓여 있었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전전(戰前)부터 지속된 종량세율 중심의 관세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어 관세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1949년 1달러당 360엔의 단

일환율이 설정되고 민간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 기능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와 GATT 가입에 대비하여 제1차 관세체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1951년). 이 개정에 의해 모든 관세는 종가세율로 전환하였으며 관세율은 담배 355%를 제외하고 5%에서 50%까지의 11단계로 책정하였다.

1955년 일본의 GATT 가입과 세계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경제운용의 효율화, 산업의 근대화, 합리화 등을 위해 일본은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관세법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세율의 분류를 CCCN조약에 따르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관세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종량세율의 채택,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선택관세 등의 특별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관세율 체계는 이 개편의 결과를 기초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5년 이후 일본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제수지 흑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을 촉진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케네디 라운드와 동경 라운드를 통해 상당한 관세인하를 단행하였으나 이러한 보호주의적 관세율 구조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관세수준을 관세부담율⁶로 살펴보면 1950년 0.3%, 1952년 2.7%, 1962년 7.3%로 상승하여 1964년 7.7%로 최고에 달하였고 케네디 라운드 이후 1969년 7.1%, 1970년 6.9%, 1972년 5.0%로 하락 하였다. 1980년 동경 라운드와 1985년 Action Program에 의한 관세인하가 진행되어 1994년 관세부담율은 3.2%에 이르러 1994년 미국의 관세부담율 3.2%, EU 3.3%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⁶ 수입액에 대한 관세수입액의 비율.

1.2.2. 현행관세제도의 특징

일본관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입억제와 관세의 산업보호적 기능의 강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일본의 관세율 책정의 일반원칙은 ① 원료 관세율의 지속적 인하, ② 반제품과 완제품의 관세율 경사도(누진체계)의 완화, ③ 생산재의 관세율은 낮게 소비재의 관세율은 높게, ④ 국산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낮게, ⑤ 고용유지 등 산업보호가 필요한 부문의 완제품 관세율은 높게, 원료 관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피혁, 섬유, 신발, 식품 등은 누진관세의 경사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자본집약적 산업(제지, 철강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재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부문은 농업, 식품가공업, 섬유, 신발류 등으로 일부 채소류는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예: 곤야쿠의 경우 923%의 관세 적용). 아울러 상당 수준의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식품가공업과 정유 산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원면, 천연고무, 나프타 등 일부 원자재의 관세는 무세이며 종이의 관세는 원자재보다 낮게 책정하여 역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임산자원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관세율 수준을 살펴보면 1997년 관세율의 단순평균은 9.4%이며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60%는 5% 이하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전체 품목의 3.3%에 불과하다. 1997년 현재 일본의 관세율 분포는 총 9,076개 품목 가운데 0% 세율 적용 품목이 35.1%, 10% 이하 적용 품목이 45.1%를 나타내고 있다. 공산품의 관세율의 단순평균은 4.9%(1997년)이며 정보기술분야 품목 가운데 57%에 이르는 품목들의 양허관세는 0% 수준이다.

관세가 양허되지 않은 품목은 수산물, 목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이며 쌀, 보리, 밀, 유제품, 원사, 잎담배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관세화가 이루어져 양허관세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관세화 품목에 대한 SSG 발동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농산물의 10%에 달하는 144개 품목(HS 4단위 기준 27개 품목)이 SSG 적용대상 품목이며 실제 SSG가 발동된 사례는 1995년 4건(전분, 분유, 유장, 생사), 1996년 7건(우유, 생사, 돈육 등)이었다. 한편, 관세할당량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이를 재배분하는 제도는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관세율의 가중평균은 공산품 1.5%, 임산물 1.0%, 수산물 4.0%, 농산물 9.3%로 낮아졌고 제조업분야의 관세율의 가중평균은 3.9%에서 1.7%로 낮아졌다.

1.2.3. 일본의 관세형태

일본의 관세율은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되며 국정세율은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GSP우대세율로 구분된다. 협정세율은 다시 WTO 협정세율과 양자간 최혜국조약에 의한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세율(基本稅率)은 관세체계의 기본이 되는 세율로서 일본의 산업정책을 기초로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관세정율법(關稅定率法)에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暫定稅率)은 산업발달 과정이나 경제변동 등 단기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기본세율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관세율로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에 규정되어 있다. 특혜관세(特惠關稅)는 UNCTAD 가맹국에 대하여 특혜관세 부여가 타당하다고 정령에 의해 지정된 경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에 규정되어 있다.

우대세율은 모든 관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잠정세율은 기

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하나의 수입 상품에 대해 복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며 이 때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유일한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이를 실행세율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은 과거 CCCN에 의한 관세분류방식을 1988년 HS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관세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알코올 음료, 석유제품, 식물성 기름 등에는 특별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특별관세로는 종량세, 종량종가 선택세, 슬라이드 관세, 차액관세, 계절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은 APEC과 ASEM의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에 속해 있지 않으며 미국과는 자동차, 반도체, 금융서비스, 보험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양자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從價稅)는 일본의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관세액도 변화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품의 적정한 가격의 파악이 곤란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관세액도 낮아져 국내 산업보호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품질격차가 큰 물품, 단기적인 가격변동이 적은 물품이다. 일본의 실행세율표(무세품 제외)의 약 88%가 종가세율이며 케네디 라운드, 동경 라운드 등 각종 관세교섭과 관세개정을 거쳐 현재 0.1% 단위로 세분되어 있다.

종량세(從量稅)는 수입품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품 가격의 고저는 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동종·동질 물품에는 동액의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산업보호 기능이 강하나 세액을 지나치게 세분하여 규정해야 하고 물가변동시 과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종량세는 물품의 성질이 균등한 것, 과세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것,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1984년 소, 말 등 103개 품목에 적용하였으나 많이 축소되어 1998년 현재 소, 말 등 82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종가종량선택세(從價從量選擇稅)는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세액(일부 품목은 낮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억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저가 수입품에 종량세를 적용하여 종가세의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과세가격이 높은 경우는 종가세가, 낮은 경우는 종량세가 적용되므로 국내산업보호기능이 발휘된다. 1984년 달걀, 어유 등 36개 품목에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는 관세율 쿼타 품목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종가종량병과세(從價從量並課稅)는 종량세와 종가세 양자를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종가종량선택세와 유사하다. 병과세는 1984년 켈런 1개 품목에서 현재에는 관세율 쿼타 품목을 중심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슬라이드(Slide) 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상승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을 강화한 형태이다. 슬라이드 관세는 1984년 햄, 양파 등 10개 품목에 적용하였고 현재는 양파, 동(銅)의 괴 등 국제시황의 변동이 심한 8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차액관세(差額關稅)는 일정한 경계가격을 설정하고 수입품의 과세가격과 경계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형태로 수입품이 일정가격 이하로 국내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산품의 보호와 가격안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차액관세는 현재 돈육 등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계절관세(季節關稅)는 수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는 관세제도로 국내 출하기와 경합되는 시기에 수입되는 품목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비출하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보호와 소비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계절관세는 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는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할당 수량의 할당방식은 선착순방식과 사전할당방식이 있는데 일본은 사전할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1984년 송아지, 맥아 등 17개 품목이었으나 현재에는 유제품, 일부 곡물류, 땅콩, 파인애플 등 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표 6-1 일본의 관세율 형태별 품목수(1997년)

세율의 형태	품목 수	비율(%)	유제품목중의 비율
무 세	2,486	34.0	-
종 가 세	4,234	57.9	87.8
종 량 세	103	1.4	2.1
종 가 종 량 선택 세	246	3.4	5.1
종 가 종 량 병과 세	0	-	-
차 액 관 세	16	0.2	0.3
슬 라 이 드 관 세	15	0.2	0.3
계 절 관 세	7	0.1	0.1
관 세 할 당 제 도	142	1.9	2.9
국 가 무 역 품 목	61	0.8	1.3
실 행 세 목 수(계)	7,310	100	100

자료: 관세청, 「일본의 관세행정」, 1988. 6, pp. 36 인용.

1.2.4. 관세의 감면, 면세, 여세(戻税) 및 환부(還付) 제도

관세의 감면, 면세, 여세(戻税) 및 환부(還付) 제도는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상의 요청과 국제조약의 이행, 국제관행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세의 감면세제도는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목적은 국내산업의 육성, 보호, 무역 또는 학술의 진흥, 사회, 후생, 정책상의 요청, 국산품 또는 이미 관세를 환급한 물품의 이중과세 배제, 국제관행, 물가 대책 등이다. 일본의 1995년 감면세액은 약 1,695억엔이었다.

관세여세제도는 법령 등이 정한 일정요건에 합치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여세제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입물품이 변질, 손상된 경우, 수출품의 제조용원재료,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 등이고 1995년 여세액은 약 12억엔이었다.

관세환부제도는 여세제도와 유사하나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부 받을자가 그 관세를 납부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상 정하여진 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부는 감면세 및 여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 그 목적은 국내산업의 육성, 유통비용의 인하 등이다. 1995년 환급액은 약 42억엔이었다.

1.2.5. 특혜관세제도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공업화의 촉진, 경제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8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수

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적용기한은 2001년 3월 31일).

특혜관세제도의 대상품목으로 농수산물(HS 1~24류)의 경우 특정품목을 선별하여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Posi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HS 4단위 기준 73 품목이 특혜관세제도의 대상이 된다. 광공업산품(HS 25~97류)의 경우 국내 산업상의 배려 등으로 27 품목(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농수산물의 경우 개개 품목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데 현행 실행세율에 대한 인하폭은 10%부터 100%로 되어 있다. 광공업산품의 특혜관세율은 원칙적으로 무세이나 무세가 곤란한 66개 품목(SP(Selected Products)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의 인하폭을 50%까지로 하고 있다.

1.2.6. 특수관세제도

일본의 특수관세제도는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이 있다.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덤핑관세)란 수출국 등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 또는 수출자 등의 덤핑에 따른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일본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긴급관세는 외국에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할증관세이며 보복관세는 WTO 협정상 의 이익을 지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어느 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입물품 또는 통관물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1.3. 관세제도 운영 현황

일본은 산업 전반에 걸쳐 누진관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반가공품(semi-processed)과 완제품(fully-processed)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업별 평균 실적 관세율은 농업부문 12.2%, 임업 3.3%, 수산업 5.8%인데 기초생산물의 평균관세율은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1%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공생산물은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종가세와 더불어 비종가세를 운용하고 있다. 비종가세 운용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제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과 저가(低價)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자국 농산물 보호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으로 농산물 경우 비종가세 형태는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종량세의 형태가 대부분이다(표 6-2).

일본은 1995년 WTO협정 하에 20여개 품목에 대해 농산물 관세 할당을 도입하였다. 관세할당은 주로 산업보호적 측면에서 저가(低價)로 투입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할당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유제품과 일부 곡물, 알콜류, 가죽 등이다(표 6-3).

표 6-2 일본의 주요 농산물 비종가 실적관세율(1996년)

품 목	실적관세	양허관세
특별관세(Specific Duty)		
쇠고기(훈제/건조/조분)	¥180.5/kg	¥161.5/kg
전지분유	28.5%+ ¥139/kg	25.5%+ ¥612/kg
밀(Drum wheat, Meslin)	¥11.27/kg	¥55/kg
옥수수(종자)	¥13/kg	¥9/kg
밀 또는 메슬린 가루	¥30.47/kg	¥90/kg
해조류	¥1.50/kg	Unbound
한 천	¥140.80/kg	¥112/kg
돈지(Pig fat)	¥9.50/kg	¥8.5/kg
대두유(조유/기타)	¥14.97/kg	¥10.9/kg
낙화생유(조유)	¥14.17/kg	¥8.5/kg
해바라기씨유(조유)	¥14.17/kg	¥8.5/kg
면실유(조유/기타)	¥14.17/kg	¥8.5/kg
유채유, 콜자유, 겨자유	¥14.97/kg	¥10.9/kg
옥수수유	¥17.27/kg	¥10.4/kg
참기름	¥14.17/kg	¥8.5/kg
사탕수수당	¥20/kg	¥71.8/kg
단풍당	¥34.60/kg	¥20.8/kg
쌀가루조제식료품(베이커리제조용품)	¥30.47/kg	¥90/kg
파스타, 스파게티, 마카로니	¥36.67/kg	¥30/kg
맥주	¥6.40/ℓ	¥3.8/ℓ
포도주	¥64/ℓ	¥45/ℓ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조주정	¥42.57/ℓ	¥154/ℓ
꼬 냉	¥193.20/ℓ	¥165.2/ℓ
위스키류	¥202.20/ℓ	¥154/ℓ
브랜디류	¥193.20/ℓ	¥36/kg
개 또는 고양이 사료	¥52/kg	
슬라이드관세(Sliding Duty)		
양파(신선/냉장)	(¥73.7-CIF)/kg	8.5
차액관세(Differential Tariffs)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X ₁ -CIF)/kg	¥361/kg
돼지고기(냉장/절단/기타)	(X ₂ -CIF)/kg	¥482/kg
돼지고기 식용설육	(1.5X ₃ -0.6CIF)/kg	¥1,035/kg
돼지고기 밀폐용기의 것, 햄, 베이컨	(1.5X ₃ -0.6CIF)/kg	¥1,035/kg
종가종량선택세(Alternative Duty)		
계란	23.3% 또는 ¥56/kg	20% 또는 ¥48/kg
조란	23.8% 또는 ¥57/kg	21.3% 또는 ¥51/kg
어류의 유지와 분획물	8.8% 또는 ¥5.28/kg	7% 또는 ¥4.2/kg
야자유(조유)	7% 또는 ¥7/kg	4.5% 또는 ¥5/kg
아마인유(조유)	8.3% 또는 ¥9.17/kg	5% 또는 ¥5.5/kg
포도당, 포도당 시럽	33.3% 또는 ¥25.67/kg	29.8% 또는 ¥23/kg
인조꿀	50% 또는 ¥25/kg	50% 또는 ¥25/kg
카라멜	50% 또는 ¥25/kg	50% 또는 ¥25/kg
진 및 제네바	19.6% 또는 ¥86.2/kg	17.5% 또는 ¥77/kg

X1: ¥450.02/kg, X2: ¥600.03/kg, X3: ¥450.02/kg

표 6-3 일본의 관세할당 주요 품목(1997년)

품 명	관 세 율		쿼 타 량
	쿼타 이하	쿼타 이상	
치즈(가공용)	무 세	32.4%	56,300t
옥수수 전분(공업용)	무 세	50% 또는 ¥12/kg	3,951,000t
옥수수 사료	무 세	50% 또는 ¥12/kg	93,700t
맥 아	무 세	¥23.15/kg	808,600t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무 세	¥16.65/kg	36,800t
코코아조제품	무 세	23.2%	18,700t
토마토페이스트	무 세	18%, 20%	36,000t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무 세	¥36/kg	50,000t
에틸알콜(80-90%)	무 세	¥41.45/ℓ	269,800kℓ
소 가 축	18.5%	48.8%	1,466m ²
양 가 축	18.5%	43.8%	1,070,000m ²

자료: 일본의 WTO Trade Policy Review 준비용 내부자료, WT/TPR/S/32.

1.4. 현행시장접근(CMA), 최소시장접근(MMA) 운용현황

현행시장접근은 1986~88년 평균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품목으로 기준기간 1993~99년에 기존수입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고 최소시장접근은 1986~88년 평균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으로 이행 초기연도에 국내소비량의 3%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기간 말까지 동일한 비율로 5%까지 증가시키되 저세율에 의한 관세할당의 방법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1995년 일본은 쌀의 수입관세를 고정하는 대신에 최소시장접근 수준을 증가시켰는데 이에 따라 6년의 이행기간 동안 쌀의 수입은 국내소비량 대비 4%에서 8%로 증가하였다. 현행시장접근 품목은 유제품과 밀, 전분, 기타곡물, 유지류 등이며 최소시장접근 품목은 쌀, 쌀가공품 등이다(표 6-4, 표 6-5).

표 6-4 일본의 현행시장접근 품목

단위: 천톤, %

품 목	관세할당량		쿼터내 관세율	초기년도 양허세율	종가세 상당관세율 1986-1988	최종연도 양허세율
	초기	최종				
현행시장접근(CMA)						
탈지분유(학교급식)	7.3	7.3				
설탕미첨가(지방≤1.5%)			무세	¥466/kg	374	¥396/kg
설탕미첨가(1.5<지방≤5%)			무세	¥500/kg	390	¥425/kg
탈지분유(기타)	85.9	85.9				
설탕미첨가(지방≤1.5%)			35.0	35+¥466/kg	374	29.8+¥396/kg
설탕미첨가(1.5<지방≤1.5%)			35.0	35+¥500/kg	390	29.8+¥425/kg
전지분유	0.0003	0.0003				
설탕미첨가(5<지방≤30%)			30.0	30+¥720/kg	477	25.5+¥612/kg
설탕미첨가(지방>30%)			30.0	35+¥1204/kg	599	25.5+¥1023/kg
설탕미첨가(5<지방≤30%)			30.0	30+¥720/kg	477	25.5+¥612/kg
설탕미첨가(지방>30%)			30.0	30+¥1204/kg	599	25.5+¥1023/kg
무당연유	1.6	1.6				
지방>7.5%			30.0	30+¥599/kg	439	25.5+¥509/kg
지방≤7.5%			25.0	25+¥299/kg	413	21.3+¥254/kg
가당연유	0.013	0.013				
지방>8%			30.0	30+¥599/kg	439	25.5+¥509/kg
지방≤8%			30.0	25+¥299/kg	413	21.3+¥254/kg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18.5	45.0				
지방≤5%			무세	35+¥500/kg	390	29.8+¥425/kg
지방>5%			무세	35+¥808/kg	505	29.8+¥687/kg
조제된 유장(유아식용)	12.0	25.0				
설탕미첨가(지방≤5%)			10.0	35+¥500/kg	390	29.8+¥425/kg
(지방>5%)			10.0	35+¥808/kg	505	29.8+¥687/kg
(지방≤1.5%)			10.0	35+¥470/kg	374	29.8+¥400/kg
(1.5<지방≤30%)			10.0	35+¥799/kg	445	29.8+¥679/kg
(지방>30%)			10.0	35+¥1204/kg	599	29.8+¥1023/kg
버터와 버터유	1.9	1.9				
지방≤85%			35.0	35+¥1159/kg	614	29.8+¥985/kg
지방>85%			35.0	35+¥1363/kg	614	29.8+¥1159/kg
기타유제품	124.6	133.9				
밀크와크림(지방≤1%)			25.0	25+¥63/kg	401	21.3+¥54/kg
밀크와크림(1<지방≤6%)			25.0	25+¥134/kg	462	21.3+¥114/kg
밀크와크림(6<지방≤45%)			25.0	25+¥747/kg	508	21.3+¥635/kg
밀크와크림(지방>45%)			25.0	25+¥1411/kg	508	21.3+¥1199/kg
요쿠르트(설탕첨가)			35.0	35+¥1076/kg	481	29.8+¥915/kg
요쿠르트(설탕미첨가)			25.0	35+¥1076/kg	481	29.8+¥915/kg
발효유(설탕첨가)			35.0	35+¥466/kg	374	29.8+¥396/kg
Designated dairy products			137.2	137.2		
탈지분유		35.0	35+¥466/kg	374	29.8+¥396/kg	
전지분유		30.0	35+¥500/kg	390	29.8+¥425/kg	
Buttermilk powder		35.0	35+¥466/kg	374	29.8+¥396/kg	
유장 및 변성유장		35.0	35+¥500/kg	390	29.8+¥425/kg	
건조채조류	120.0	120.0				
완두			10.0	¥417/kg	531	¥354/kg
팥			10.0	¥417/kg	531	¥354/kg
기타			10.0	¥417/kg	531	¥354/kg

자료: <표 6-3>과 同一.

표 6-4(계속)

품 목	관세할당량		쿼타내 관세율	초기연도 bound rate	Ad valorem equivalent 1986 - 1988	최종연도 bound rate
	초기	최종				
밀, 메슬린과 그 가공품	5,565.0	5,740.0				
드럼 밀(Durum)			무세	¥65/kg	413	¥55/kg
메슬린			20.0	¥65/kg	413	¥55/kg
사료용 밀			무세	¥65/kg	413	¥55/kg
기타 밀			무세	¥65/kg	413	¥55/kg
기타곡물			무세	¥65/kg	413	¥55/kg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공업용(글루타민산)			12.5	¥106/kg	482	¥90/kg
기 타			25.0	¥106/kg	482	¥90/kg
기타 곡물가루			25.0	¥106/kg	482	¥90/kg
분쇄물 및 조분						
밀의 것			25.0	¥106	482	¥90
기타곡물의 것			20.0	¥106/kg	482	¥90/kg
밀 펠리트			25.0	¥106/kg	482	¥90/kg
기타곡물 펠리트			20.0	¥106/kg	482	¥90/kg
밀 전분			25.0	¥158/kg	451	¥134/kg
베이커리 제조용			25.0	¥106/kg	482	¥90/kg
보리 및 보리 가공품	1,326.5	1,369.0				
보리(사료용 포함)			무세	¥46/kg	306	¥39/kg
보리가루			25.0	¥98/kg	338	¥83/kg
보리 분쇄물 및 조분			20.0	¥98/kg	338	¥83/kg
기타가공보리			20.0	¥107/kg	334	¥91/kg
전분, 이눌린과 그 가공품	157.0	157.0				
옥수수, 감자 전분			25.0	¥140/kg	480	¥119/kg
기타전분			25.0	¥140/kg	480	¥119/kg
베이커리 제조용			25.0	¥140/kg	480	¥119/kg
낙화생	57.0	75.0				
낙화생			10.0	¥726/kg	516	¥617/kg
콘야쿠	0.3	0.3	40.0	¥3289/kg	485	¥2796/kg

자료: <표 6-3>과 同一.

표 6-5 일본의 최소시장접근 품목

단위: %

품 목	관세할당량		쿼타내 관세율	초기연도 bound rate	종가세 상당 1986-1988	최종년도 양허관세
	초기	최종				
쌀 또는 쌀 조제품	379.0	758.0				
조 곡			무세	not applicable.	n.a.	n.a.
현 미			무세	n.a.	n.a.	n.a.
정미(연마·광택여부불문)			무세	n.a.	n.a.	n.a.
쇄 미			무세	n.a.	n.a.	n.a.
쌀가루			25.0	n.a.	n.a.	n.a.
쌀분쇄물			25.0	n.a.	n.a.	n.a.
쌀펠리트			25.0	n.a.	n.a.	n.a.
쌀플레이크			25.0	n.a.	n.a.	n.a.
베이커리제조용 가공쌀			25.0	n.a.	n.a.	n.a.
볶거나 부풀린 쌀			19.2	n.a.	n.a.	n.a.
증량30%이상 쌀함유 식품			25.0	n.a.	n.a.	n.a.

자료: <표 6-3>과 同一.

1.5. 일본과 주요 국가별 농산물 관세율 비교

일본의 기초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으나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채소류의 기본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매우 낮다. 과일류의 관세율 차이는 채소류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낙농품의 관세율은 한국,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한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기본관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관세율 체계를 지니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6-6).

표 6-6 일본과 주요 국가별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 비교(1996년)

품 목	단위: %			
	일 본	한 국	미 국	중 국
버터밀크, 우고유, 요쿠르트	sr	40.0	sr	50.0
치즈와 커드	34.7	40.0	sr	50.0
감 자	4.6	15.0	sr	21.0
토마토	4.3	50.0	sr	22.0
양파, 쪽파, 마늘, 부추 기타 파속 채소	6.9	38.0	sr	22.0
양배추, 케일, 기타 식용의 배추속	4.3	30.0	sr	22.0
상치, 치커리	4.3	29.0	sr	26.0
당근, 순무, 무, 선모, 세러리아크 등	4.3	30.0	sr	22.0
오이류	4.3	30.0	sr	22.0
채두류	4.3	30.0	sr	22.0
냉동채소	9.6	30.0	sr	22.0
일시저장처리 채소	11.7	30.0	sr	22.0
매니옥, 칠파리, 샐러, 돼지감자, 고구마	11.4	27.1	8.1	21.3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3.0	30.0	0.0	30.0
바나나(플렌틴 포함)	26.7	30.0	0.5	30.0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망고 등	7.3	30.0	sr	32.6
감귤류의 과실	14.9	50.0	sr	47.2
포 도	10.7	40.0	sr	55.0
멜론, 수박, 포포우	6.9	43.3	15.6	48.0
사과, 배, 마르멜로	13.0	50.0	sr	35.0
살구, 버찌, 복숭아(베타린), 자두	8.9	50.0	sr	48.0
냉동과실, 냉동견과류	15.4	30.0	sr	55.0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22.2	30.0	sr	55.0
건조한 과실	11.9	50.0	sr	45.1
커피(볶음, 안볶음, 카페인, 디카페인)	8.0	5.5	sr	25.8
차 류	12.2	40.0	2.7	30.0
맥 아	sr	30.0	sr	35.0
대 두	0.0	5.0	0.0	114.0
대두유와 그 분획물	sr	8.0	13.9	121.6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	sr	8.0	sr	50.0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sr	6.0	sr	30.3
설탕과자	24.6	8.0	sr	15.0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품	sr	12.7	sr	15.0
파스타, 스파게티, 국수, 마카로니	sr	8.0	5.9	40.0
콘플레이크 및 유사 조제식료품	sr	12.7	10.0	50.0
빵, 파이, 케이크, 비스켓 등	22.4	8.0	1.2	40.0
맥 주	16.7	30.0	sr	70.0
포도주	sr	30.0	sr	67.5

주: 관세율은 각 상품(HS 4단위 기준)에 적용되는 세율의 평균(1996년 자료)이며
sr은 특별관세의 적용으로 종가세 자료가 없는 품목임.

자료: APEC, APEC Food: Trade and Tariffs, 1998, Working paper.

2. 미국의 관세제도

미국의 농업정책은 주로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정책보다는 국내 보조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다. 미국의 기본관세율은 350%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율은 25% 이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관세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높았던 이유도 있지만 무역장벽은 소비자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책의 효율이 저하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품목이나 농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보다는 적절한 국내보조 정책을 취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책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995년 증가세가 적용되는 417개 농산물(HS 10단위) 중 6~1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176개 품목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여 6~10%를 중심세율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웨이버품목으로 수입제한하였던 쇠고기, 땅콩, 유제품 등의 관세(관세상당치)는 3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공산품을 포함한 미국의 전체 평균관세율은 1998년 6.3%이다.

가공도별 관세의 누진성을 보면 유지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관세의 누진성(Tariff Escalation)이 나타나는 반면 비스킷, 초콜릿, 토마토 관련제품은 역누진성을 보이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관련 산업의 로비에 따라 결정되는 자의적이고 혼란한(random and chaotic) 성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의 관세율을 인상, 조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관세조정의 사례는 EU, 칠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U는

높은 관세상당치(양허관세)하에서 종전과 같은 변동부과금 제도를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관세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5년 미국의 기본관세율은 1990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버터와 버섯류가 다소 상향조정되었을 뿐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기본세율은 1990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1998년의 기본세율은 전체적으로 1995년에 비해 다소 하향 조정되었는데 육류의 경우만 199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하향조정 폭을 품목별로 개괄하면 낙농품 약 10%, 곡물류 약 40%, 채소류 약 22%, 과실류 약 12%, 유지류 약 15%, 설탕과자류 약 20%, 곡물조제품 약 7%, 채소과실 조제품 약 18% 수준이었다.

미국의 관세부과형태는 종가세, 종량세, 병과세, 선택세 네 가지가 운용되는데 많은 품목이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절화류, 채소류(일부), 가공채소류(일부) 등은 주로 종가세 형태로 관세가 부과되며 육류, 낙농품, 채소류, 가공채소류, 과실류, 곡물류, 곡물조제품, 유지류, 가공육류, 과실조제품 등이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병과세의 형태를 보이는 품목은 버섯류와 필터담배 등이다. 한편 무세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커피 및 차류, 사과·배·감, 인삼류, 코코아조제품(초콜릿), 국수·빵·비스킷류, 배합사료 등이다.

미국의 관세율 구조는 원료농산물은 무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별로 기본관세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3).

- ① 육류: 돼지고기는 무세가 적용되며 쇠고기와 닭고기는 종량세가 부과되는데 쇠고기는 4.4 ¢/kg, 닭고기는 18.7 ¢/kg로 닭고기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② 낙농품: 요쿠르트와 유장분말, 치즈에는 10~20%의 종가세가

- 부과되며 탈지·전지분유, 버터, 밀크와 크림에는 0.36~12.3 ¢/kg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 ③ 채소류: 대부분의 채소는 0.56~4.4 ¢/kg의 종량세가 부과되며 호박류, 오이류는 6~9%의 종가세가 버섯류의 경우는 병과세가 부과된다.
- ④ 과실류: 수박(12.7%의 종가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량세가 부과된다. 견과류의 경우는 무세~28.7 ¢/kg, 신선과일류는 무세~2 ¢/kg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코코넛, 캐슈넛, 밤, 바나나, 사과, 배, 감, 대추 등이다.
- ⑤ 커피 및 차류: 커피와 차는 대부분 무세가 적용되는데 녹차만이 종량세가 부과된다.
- ⑥ 곡물류: 메쌀(13.3%의 종가세)을 제외하고 대부분 0.1~0.49 ¢/kg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 ⑦ 채유용 종자류: 대두, 참깨, 들깨는 무세가 낙화생은 6.6 ¢/kg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 ⑧ 유지류: 대두유는 20.2%, 옥수수유는 3.6%의 종가세가 부과되고 낙화생유, 참기름 등은 0.95~7.9 ¢/kg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유지류는 채유용 종자류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⑨ 곡물조제품: 곡물조제품은 대부분 종가세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국수류와 비스킷류, 식빵 등은 무세가 적용된다. 곡물류와 비교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⑩ 채소·과실조제품: 채소조제품은 대부분 종가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은 5.1~12.3%로 채소류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실조제품의 경우 조제저장처리된 것은 종가세가 주스류는 종량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5.3~18%, 2.4~5.1 ¢/kg로 과실류보다 높게 나타난다.

3. EU의 관세제도

1998년의 EU의 기본관세율은 1990년, 1995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EU의 기본관세율 구조의 특징은 과실, 채소류에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성출하기에 해당하는 하절기에는 높은 세율을 비출하기에 해당하는 동절기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토마토, 오렌지, 레몬, 포도, 멜론, 배, 살구, 체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EU의 관세부과형태는 종가세, 종량세, 병과세, 선택세 네 가지가 운용되는데 채소류, 과실류는 주로 종가세가 곡물류와 낙농품은 종량세가 적용된다. 곡물조제품과 과실·채소조제품은 종량세와 병과세가 육류의 경우도 종량세와 병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무세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계란, 채유용종자류, 인삼류 등이다.

EU의 관세율 구조는 원료농산물은 무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별로 기본관세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2).

- ① 육류: 쇠고기는 병과세, 닭고기는 종가세, 돼지고기는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 ② 낙농품: 대부분의 낙농품은 156.8Ecu/100~215Ecu/100kg의 종량세가 부과되며 계란은 무세, 천연꿀은 30%의 종가세로 부과된다.
- ③ 채소류: 대부분의 채소는 9~19%의 종가세가 부과되며 토마토의 경우는 병과세의 형태로 계절관세가 부과된다.

- ④ 과실류: 견과류는 주로 무세에서 8%의 종가세가 부과되며 신선 과일류는 병과세+선택세, 종가세 등이 부과된다. 병과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포도, 감귤, 오렌지 등이고 병과세+선택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배 등이다. 감, 대추, 매실, 바나나 등은 11~20%의 종가세가 부과된다. 오렌지, 레몬, 포도, 멜론, 배, 살구, 체리 등은 계절관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 ⑤ 커피 및 차류: 커피는 12~15%, 녹차는 23%의 종가세가 부과되고 홍차의 경우는 무세가 적용된다.
- ⑥ 곡물류: 대부분의 곡물류는 145~650Ecu/t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 ⑦ 채유용 종자류: 대부분의 채유용 종자는 무세가 적용된다.
- ⑧ 유지류: 대두유, 낙화생유, 유채유 8%, 참기름 5%, 들기름 3%의 종가세가 부과된다. 유지류는 채유용 종자류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다.
- ⑨ 곡물조제품: 곡물조제품은 대부분 병과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설탕 함유량, 지방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되어 있다. 병과세의 형태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곡물류에 적용되는 세율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곡물조제품의 세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 ⑩ 채소·과실조제품: 채소조제품은 대부분 종가세가 적용되는데 세율은 18~22%로 채소류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실조제품의 경우 조제저장처리된 것은 20~32%의 종가세가 주스류는 $42\%+25.7\text{Ecu}/100 \sim 50\%+151\text{Ecu}/100\text{kg}$ 의 병과세가 부과되는데 과실류와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 7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개편 방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관세율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다. 관세율 구조개편 시기에 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관세정책의 산업정책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세율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WTO 주도로 시작될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관세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관세율구조 개편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중 하나이다(관세청, 1998).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구조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개편과 조정에 관한 논의는 관세협상력 유지라는 측면과 산업보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양허세율의 인하나 대폭적인 관세율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 주도로 시작될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관세 협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

에서 관세율 조정 및 관세체계 개편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관세율 구조개편 논의에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 개편과 조정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역관세의 논란이 되어온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간의 관세구조를 검토하여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관세율 조정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관세율 구조개편은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특별작업반을 설치하여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관세정책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어느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관세율구조가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가운데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획일적인 해답은 없다. 국별 경제구조, 산업별 차이,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별로도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그러한 산업은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에 대하여는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산업을 보호하는 누진관세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관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단일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정도밖에 없다(박상태, 1996).

관세체계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균등관세율제도가 차등세율제도에 비해 반드시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현재의 균등관세율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지난 15년간의 균등관세율제도가

예외 품목의 적용, 관세외적 무역제한 등으로 실효보호율의 균등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관세청, 1998). 이러한 상황에서 균등관세율 제도가 차등관세율제도보다 반드시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조사된 가공식품과 원료의 관세율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이 많다. 우리 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과 EU가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은 누진관세와 역관세가 혼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마토 관련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제품, 초콜릿, 비스킷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외적 통상마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료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먼저 관세단계의 다단계화와 과세방법의 다양화로 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하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투입요소와 원료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관세 인상, 또는 이들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 등이 있다. 관세체계가 누진

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농업 투입요소와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관세율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세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역관세 현상으로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한 산업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 누진관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품목의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역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에 의하면 완제품의 명목보호율이 높은 산업에서 실효보호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느 산업이든 여러 가지의 중간투입물이 사용되고 있어 중간투입물의 관세인하를 통한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품목의 관세를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2. 관세율 단계 확대 및 부과방식의 다양화

우리 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고 차등관세 제도 도입 및 관세 종류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관세율 단계가 많게는 94단계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12단계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관세의 단계가 많은 것은 소수점 이하까지 관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품목간 누진관세 체계유지를 통한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단순한 관세단

계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가 종가세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에 반해 선진국들은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관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에 대한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저가품의 범람을 방지하고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과세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차등관세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료농산물의 국내 생산여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산과 수입품간의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원료농산물 또는 원자재 사이에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과 가공식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세번분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렌지의 경우 농축액과 음료가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를 분리하여 누진관세체계를 이루도록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관세율 조정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인하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부분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일부 종자 및 원료농산물의 관세는 형평성과 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투입재로써의 농산물이나 농자재의 관세율은 대부분 0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묘목류, 구근류, 산동물 등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과자류, 아이스크림, 과즙음료, 초콜릿 등 조사된 품목의 관세율을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의 관세율과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관세율은 EU, 일본,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인스턴트 커피와 아이스크림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EU와 중국의 관세율은 대부분 우리 나라에 비해 각각 1.5~3.5배, 1.5~6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도 우리 나라에 비해 1.5~4.5배 높다. 미국은 대부분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이스크림과 커피 관련제품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일부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OECD 국가들의 기본관세율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캔디, 껌 등 다섯 개 제품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노르웨이뿐이다. 다섯 개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 나라가 8%임에 비해 우리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 OECD 회원국들의 관세율은 12.3%에서 120%까지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15배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다섯 개 제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35.7%로 우리 나라에 비해 4.5 배나 높다. EU 국

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23.5%로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균 관세율도 각각 31%와 19%에 달한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수출 선진국들의 관세율이 일부 가공식품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야의 산업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한 역관세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관세율이 현저히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인상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현행 8% 관세율하에서 국내산업이 관세과잉(Tariff Redundancy) 상태를 나타내는 분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관세인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인상이 필요한 분야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경쟁국들의 관세 수준, 국내외가격차, 자급률, 양허관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급률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한 품목은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효보호율 추정에 있어서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간주하였다. 이는 기본관세율하에서 원료의 공급에 제약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가공식품의 실효보호율이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양허관세율하에서 원료 농산물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실효보호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세율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관세율 조정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원활한 공급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관세체계 개편은 문제가 되는 몇몇 품목의 관세율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행해온 관세정책의 기초를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농산물과 일부 가공식품의 예에 비추어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균등관세정책의 문제점과 이러한 균등관세체계 속에서도 일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역관세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관세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종합적인 관세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관세의 재정적 기능, 자원배분 기능,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도 관세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 물가상승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관세가 인상된 품목의 국내가격 상승은 생산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투입재 수요증가, 생산요소 재배분, 대체효과에 따른 대체재 생산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생산과 자원재배분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인상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APEC은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현재수준 이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Standstill”을 선언해 놓고 있다. 관세인하는 인상의 경우와 반대되는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관세 인상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관세 인하는 생산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소비자 후생 감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세인상을 가격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통한 품질 향상, 공급능력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세 인하로 발생하는 생산감소와 생산자 후생감소는 관세 인하로 이익을 보는 계층을 고려한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통해 자원의 유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dead weight loss)의 최소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는 국정관세, WTO 양허관세 등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관세화에 의한 관세상당치와 종량세를 도입하여 한층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 속에 농업과 식품 산업간에 누진관세와 역관세, 균등관세 제도와 차등관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구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단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농업 부문 관세율 구조와 농업과 식품 산업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적절한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기본관세율 구조

우리 나라 기본관세율의 높고 낮음은 중심세율 8%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농산물 가운데 중심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종자, 공업용 원료농산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품목이다. 특히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사료곡물과 박류는 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심세율인 8%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일부 농업용 자재(과수묘목, 구근류, 종마 등)와 전분, 약재용 축산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매우 높은 관세율인 40~50%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유제품, 유지작물, 차류(이상 40%의 관세 부과)와 냉장돈육, 과실류 및 그 가공품(주스 등의 원료), 토마토,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호도, 밤 등이다. 이들 품목의 특징은 국내 생산이 많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기본관세율 분포로 볼 때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는 산업보호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옥수수, 대두 등의 시장접근 물량에 대하여는 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낮은 관세가 발작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료곡물과 박류도 5% 이하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축산업은 타분야에 비해 관세에 의한 높은 산업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종자, 종축은 0% 세율이 적

용되어 농업보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단일관세율체제와 관세인하 정책으로 가공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중심세율 8%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이 8% 중심세율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참기름, 들기름, 낙화생유 등 국내 생산이 많거나 경쟁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도 8%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은 12단계로 되어있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농산물 및 식품관련 기본관세를 종가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과 같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교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관세 단계를 세분화하고 과세방법을 다양화하여 품목간 누진관세 체계유지를 통한 산업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단순한 관세단계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3. 양허관세율 구조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946.6%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

세화 과정에서 수많은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68개 품목의 양허관세에는 종가종량선택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가종량선택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 사이에 분포하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6~946.6%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일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고 특히 관세화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관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품목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양고기, 가공육류 등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채소류, 밀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관세협상에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없고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은 수준에 있는 품목은 오렌지, 농업용 종자, 주류, 일부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 품목도 양허관세 인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

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일쥬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4.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결과는 모든 중간재를 교역재라고 가정한 전통적 방식과 Corden 방식, Balassa 방식 사이에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의 크기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대체로 전통적 방식에 의한 추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alassa 방식이 가장 낮았다. 농업부문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낮거나 음(-)으로 나타난 부문은 벼, 낙농, 육우, 양돈, 보리, 밀, 잡곡, 종자산업 등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목보호율로 사용한 실적 관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산업은 도축육, 정맥, 채소류, 과일류, 유지작물, 잎담배 등이다. 정미 부문은 비관세장벽이 유지되고 있는 부문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명목보호율로 적용되어 추정될 경우 실효보호율은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는 Corden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효보호율의 범위가 -9.2%에서 +409.8%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가운데 국수류의 실효보호율이 가장 높았다. 국수류는 조정관세 부과로 완제품의 관세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유제품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의 두 배를 넘는다. 과일 및 채소가공품 등 원료 농산물과 완제품의 관세가 동일 수준인 가공식품은 기타 투입물의 관세가 낮아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 가공도가 높은 식품류는 실효보호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과와 제빵, 장류(소스), 당류, 식용유 등의 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별 실효보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추정한 실효보호율이 21개 제품가운데 15개 제품에서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난 제품은 캔디, 초콜릿, 배음료, 포도음료, 아이스크림, 딸기음료, 커피크림어 등이다. 실효보호율과 명목보호율이 비슷한 제품은 새우칩, 쿠키, 홍차음료 등으로 명목보호율이 완제품보다 낮거나 동일한 원료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품목은 오렌지음료와 파인애플 음료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 공통된 사항은 명목보호율이 높은 산업에서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정책의 산업보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관세정책을 통해 어느 산업의 실효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투입재의 관세를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투입물의 관세 조정을 수반하게 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5.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 가운데 과자류, 아이스크림, 캔디류, 초콜릿의 관세율을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EU, 일본,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U와 중국의 관세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1.5~3.5배, 1.5~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도 우리 나라에 비해 1.2~4.5배 높다. 미국은 대부분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이스크림과 커피 관련제품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일부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OECD 국가들의 기본관세율을 비교하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캔디, 껌 등 다섯 개 제품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노르웨이뿐이다. 다섯 개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 나라가 8%, 미국이 7.5%, 노르웨이가 7% 등이다. 우리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 OECD 회원국들의 관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15배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23.5%로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균 관세율도 각각 31%와 19%에 달한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수출 선진국들의 관세율이 일부 가공식품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야의 산업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된 일부 가공식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율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과 EU는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원료와 완제품사이의 관세율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관세율 누진정도가 타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원료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는 품목은 비스

켓, 초콜릿(벌크초콜릿 제외), 토마토 관련 제품 등이다. 반면 유지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관련제품은 누진관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품목별로 누진관세와 역관세가 혼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마토 관련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 제품, 초콜릿, 비스킷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생산이 많은 원료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진다.

6.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 방향

6.1. 누진관세체계의 도입

관세체계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균등관세율제도가 차등세율제도에 비해 반드시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현재의 균등관세율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지난 15년간의 균등관세율제도가 예외 품목의 적용, 관세외적 무역제한 등으로 실효보호율의 균등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누진관세체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의 중요도에 따라 심한 누진관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균등관세율제도가 보호무역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지도 못하고 부문간 실효보호율을 반드시 같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를 도입한다면 관세단계의 확대와 과세방법의 다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역관세 현상으로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관세율 조정을 통한 산업보호가 필요하다.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 누진관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품목의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역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6.2. 관세단계의 확대

우리 나라의 관세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관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의 12 단계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단순한 관세단계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 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번분류(HS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세 번내에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을 가공도와 혼합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관세율을 소수점이하까지 세분화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들을 품목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3. 과세방법의 다양화

우리 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가 종가세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에 반해 선진국들은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관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에 대한 대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저가품의 범람을 방지하고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종량세, 종가종량복합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과세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6.4. 관세율 조정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인하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구근류와 묘목 등 일부 종자 및 원료농산물의 관세는 형평성과 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투입제로써의 농산물이나 농자재의 관세율은 대부분 0세율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나 묘목류, 구근류, 산동물 등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현행 8% 관세율하에서 국내산업이 관세과잉(Tariff Redundancy) 상태를 나타내는 분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관세인하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인상이 필요한 분야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경쟁국들의 관세 수준, 국내외가격차, 자급률, 양허관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급률이 높을수록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한 품목은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관세체계 개편은 문제가 되는 몇몇 품목의 관세율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행해온 관세정책의 기초를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관세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관세의 재정적 기능, 자원배분 기능,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관세 인상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상승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APEC은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현재수준 이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동결조치(Standstill)”를 선언해 놓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조정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통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Abstract>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As trade liberalization proceeds toward abolishment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lowering tariffs, tariffs as industrial instrumen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Korean tariff policy has changed to the uniform rate system and lowering tariffs. However,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has become complicated by introducing tariff equivalents and specific tariffs at the Uruguay Round.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e pros and cons of tariff escalation and uniform rate of tariffs and on the problems of current simple tariff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and to derive som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tariff policy for industry protection.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tariff on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Consumers are protected by imposing low tariffs on absolute supply deficient products such as corn and soybeans within quota imports. Relatively high tariffs are applied to out-of-quota imports to protect producers. Many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in terms of farm income and domestic production are subject to the tariff rates of 40 to 50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tariff structure of the processed food sector is relatively simple and

many processed food items face low rates of tariff, i.e. the central rate of 8 percent tariff. Food processors have argued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the existence of reverse tariff escalation.

The structure of general tariff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is as simple as being consisted only with 12 stages, from zero to 50 percent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the stages of general tariff for the commodities which are subject to ad valorem tariff are 94 for the U.S., 50 for Japan and 34 for the EU countries. Tariff imposing methods are also overly simple in Korea which depend only on ad valorem tariffs.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adopting various kinds of tariffs, e.g. specific, ad valorem-specific alternatives and ad valorem-specific compound.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ERPs) are estimated for some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in order to evaluate the real protective effects of tariffs. There are three measurement methodologies of traditional method, Corden method and Balassa method utilizing the 1995 input-output table. We found consistency among the results of the three different methods and there was a tendency high ERPs being measured by the traditional method and low ERPs by Balassa method. Rice, barley, wheat, dairy cow and beef cattle industries have shown relatively low ERPs by Balassa method. Rice, barley, wheat, dairy cow and beef cattle industries have shown relatively low ERP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igh ERPs have been found in meat, vegetables, fruits, oilseeds and tobacco industries. For processed food, industries which have high ERPs are noodle, dairy and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 Some highly processed food

items such as ice cream, bakery products, sauce, confectionary and vegetable oil have shown negative or very low ERPs.

The ERPs acquired utilizing the input-output table represent only protective effects for the industry in general rather than some specific products or items. The ERPs for 21 specific processed food products are also measured in this study. The ERPs for 15 products such as candy, chocolates, pear beverages, grape juice, ice cream, and coffee creamer were lower than nominal protection rates or general tariff rates while some products such as orange juice and pineapple juice have higher ERPs than general tariff rates. The ERPs for cookies and black-tea were almost the same as nominal protection rates.

Those products which have higher nominal protection rates tend to represent higher ERPs.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raise tariff rates for outputs or final goods rather than lowering tariffs of intermediate goods in order to increase protective effects of tariffs. In practice, we may encounter much more difficulties in lowering tariffs of many intermediate goods to increase ERPs for an output than in raising tariffs of the output.

General tariff rates for cookies, ice cream, candy and chocolates in Korea are lower than those of EU, Japan and China. In the case of ice cream and chocolates, the U.S. has higher tariff rates than Korea. When we compare general tariff rates for ice cream, chocolates, biscuits, candy and chewing gums among the OECD countries, there are only two countries, the U.S. and Norway, which have lower tariff rates than Korea. Average tariff rate for those

five products is 7.5 percent in the U.S. and 7 percent for Norway while it is 8 percent for Korea. The average tariff rates for other countries are 120 percent for Poland, 23.5 percent in the EU countries, 31 percent for New Zealand and 19 percent for Australia, etc.

For the products surveyed in this study, there exist various tariff structures, e.g. EU and Japan maintain tariff escalation system, the U.S. and China have both tariff escalation and deescalation systems. Deescalation system of tariff is dominant in Korea. Tariff escalation system is well established and the tariff differential between outputs and intermediate inputs is significant in Japan and EU. The U.S.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in coffee, ice cream, and oilseed related products but tariff deescalation is found in biscuits, chocolates and tomato related product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in coffee, ice cream, and tomato related products but has tariff deescalation in biscuits, chocolates and oilseed related products.

Some drawbacks have been found in the Korean tariff structure. First, the current system of uniform tariff rate is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industry protection. Many developed countries maintain tariff escalation system which is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on than uniform tariff rate system. Furthermore, there are some sectors such as food processing industry which suffer from tariff policy by the tariff deescalation system. Second, tariff rate stages are too simple to perform the purpose of industry protection. Third, the tariff imposing method is confined to *ad valorem* in Korea so that it is relatively rigid

compared to the system of other competitors. Tariff system based only on ad valorem has constraints of having to cope with price fluctuations and import surge of some products with low price and quality. Fourth, there are some products requiring adjustment of tariff rates. Tariff levels of som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s need to be lower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final goods. Also, for some processed food products, tariff rates should be either raised or the tariff rates of the intermediates need to be reduced.

Korean tariff policy needs to be changed to achieve the major goal of tariffs. The system of uniform rate of tariffs should be reexamined under the global trend of liberalization. One of the alternatives to uniform tariff system is tariff escalation system. More detailed HS lines are prerequisites of introducing an effective tariff escalation system. Under the detailed or more specified tariff lines, tariff escalation system can be easily established by lowering tariffs in some of the intermediates as well as raising tariffs for outputs. Korea also needs to widen the stages of tariff rates and introduce more flexible and various taxation methods of tariffs, i.e. specific tariffs, ad valorem-specific alternative tariffs and ad valorem-specific compound tariffs. Tariff rate changes are also required. Tariff reduction is necessary for some raw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while tariff rates for some processed food need to be raised.

Researcher : Sei-Kyun Choi, Jae-Ok Lee, Myong-Keun Eor

E-mail Address : skchoi@kreisun.krei.re.kr

부표 1 양허관세율과 기본관세율 분포

품 목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 기본관세율
02류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가공육류
04류 낙농품	탈지, 전지분유, 버터밀크, 유장분말, 버터, 천연꿀		밀크와크림, 요쿠르트, 치즈
06류 수목, 화훼	구근류, 묘목류, 화훼류, 절화류		
07류 식용채소	감자, 양파, 마늘, 당근, 무, 오이류, 버섯류, 건조채소류, 녹두, 팥, 매니옥, 고구마		토마토, 쪽파, 배추, 상치 완두, 콩, 호박, 냉동채소류
08류 식용과실 및 견과	코코넛, 캐슈넛, 아몬드, 밤, 잣,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감, 대추, 매실	오렌지	호도, 레몬과라임, 포도, 수박, 멜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딸기
09류 커피, 차	커피, 녹차, 홍차, 고추류, 계피, 카레		
10류 곡물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수수, 메밀		밀(종자/사료/제분용)
11류 제분, 전분	곡물가루, 곡물분쇄물, 조분, 곡물펠리트, 가공곡물, 전분		밀가루
12류 채유용종자	대두, 낙화생, 참깨, 들깨, 호프, 인삼류, 약용식물	채소종자등(무세)	유채
13류	인삼류(홍삼정)	인삼정, 인삼엑즙	
15류 유지류	낙화생유, 유채유, 옥수수유, 참기름, 마가린, 쇼트닝		대두유, 면실유, 들기름, 해바라기씨유,
16류	가공육류		소시지
17류 당류, 설탕과자	사탕수수당, 유당, 당류, 추잉껌, 캔디류, 드롭프스 캐러멜, 설탕과자		
18류 코코아	코코아두, 코코아페이스트, 초코렛및초코렛과자		
19류 곡물 조제품	국수류, 콘플레이크, 빵, 비스킷, 크래커, 파이		
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	조제저장처리 채소류, 토마토페이스트, 김치, 조제저장처리 버섯류, 조제저장처리 두류, 오렌지/토마토/복숭아/딸기/채소즙스	쪽파(조제저장처리)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포도/사과즙스
21류 기타조제	인스탄트커피, 케첩, 장류, 마요네즈, 두부, 과즙음료		
22류 음료알콜		포도주, 청주, 약주, 탁주, 위스키, 럼주, 보드카, 소주	
23류	배합사료(어류용), 박류		배합사료(양계,양돈,축우)
24류	입담배, 필터담배		

자료: 대한민국정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 1994.

부표 2 EU의 관세율

품 목 명	1990		1995		1997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쇠고기(신선/냉장)	20+AGR		20+2763Ecu/T	20+2763Ecu/T	20+2763Ecu/T	17.12+2365Ecu/T
쇠고기(냉동)	20+AGR		20+2763Ecu/T	20+2763Ecu/T	20+2763Ecu/T	17.12+2365Ecu/T
돼지고기(냉장)	20(AGR)	Domestic others 7%	838Ecu/T	838Ecu/T 3%	838Ecu/T 7%	717.2Ecu/T 1.8%
돼지고기(냉동)	20(AGR)	Domestic others 7%	838Ecu/T 7%	838Ecu/T 3%	838Ecu/T 7%	717.2Ecu/T 1.8%
어린이양(냉장)	20(AGR)		20+2677Ecu/T	20+2677Ecu/T	20+2677Ecu/T	17.12+2291.4Ecu/T
어린이양(냉동)	20(AGR)		20+2013Ecu/T	20+2013Ecu/T	20+2013Ecu/T	17.12+1723Ecu/T
닭고기(냉장)						
닭고기(냉동)	5(AGR)		3%	3%	3%	1.8%
사슴고기(기타육)	13%		13%	10%	13%	8.56%
밀크와크림	16(AGR)		215Ecu/T	215Ecu/T	215Ecu/T	184.2Ecu/T
탈지분유	18(AGR)		1568Ecu/T	1568Ecu/T	1568Ecu/T	1442.4Ecu/T
전지분유	18(AGR)		2121Ecu/T	2121Ecu/T	2121Ecu/T	1815.4Ecu/T
요쿠르트(액상)						
유장분말						
버 터	23(AGR)		2962Ecu/T	2962Ecu/T	2962Ecu/T	2535.6Ecu/T
치즈(신선)	23(AGR)		2893Ecu/T	2893Ecu/T	2893Ecu/T	2476.6Ecu/T
조란(닭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천연꿀	30%		30%	27%	30%	23.12%
녹용(전지)	FREE		FREE	FREE	FREE	FREE
류 립	10%		10%	8%	10%	6.84%
백 합	10%		10%	8%	10%	6.84%
과수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사과나무	3%		3%	3%	3%	1.8%
카네이션(절화/신선)						
백합(절화/신선)	20%		20%	6/1-10/31 24% 11/1-5/31 17%	20%	6/1-10/31 19.2% 11/1-5/31 13.6%
장미(절화/신선)						
감자(기타)	9%		9%	9%	9%	7.72%
토마토(신선/냉장)	(1)		(1)	11%	(1)	10.12%
양파(신선/냉장)	12%		12%	12%	12%	11.04%
마늘(신선/냉장)	12%		12%	12%	12%	11.04%
양배추(신선/냉장)	15 MIN		15 MIN	15 MIN	15 MIN	13.8 MIN
배추(신선/냉장)	0.5Ecu/100kg		0.5Ecu/100kg	0.5Ecu/100kg	0.5Ecu/100kg	0.46Ecu/100kg
상치(신선/냉장)	(2)		(2)	(2)	(2)	
당근(신선/냉장)	17%		17%	17%	17%	15.64%
무(신선/냉장)	5/1-9/30 13% 10/1-4/30 17%		5/1-9/30 13% 10/1-4/30 17%	5/1-9/30 13% 10/1-4/30 17%	5/1-9/30 13% 10/1-4/30 17%	5/1-9/30 11.96% 10/1-4/30 15.64%
오이류(신선/냉장)	11/1-5/15 16% 5/16-10/31 20%			16%		14.72%
송이버섯(신선)	16% (cultivated)		16% (cultivated)	16% (cultivated)	16% (cultivated)	14.72% (cultivated)
양송이버섯(신선)	10% (chantarelles, flampushroom)		10% (chantarelles, flampushroom)	4%, 7% (chantarelles, flampushroom)	10% (chantarelles, flampushroom)	3.68%, 6.44% (chantarelles, flampushroom)
표고버섯(신선)						
감자(냉동)	19%		19%	18%	19%	16.56%
양파(냉동)	19%		19%	18%	19%	16.56%

(1) 11/1 - 5/14 11 MIN 2Ecu/100kg/net, 5/15 - 10/31 18 MIN 3.5Ecu/100kg/net

(2) 4/1-11/30 15 MIN 2.5Ecu/100kg, 12/1-5/31 13 MIN 1.6Ecu/100kg

부표 2(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7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양송이버섯(건조)	16%		16%	16%	16%	14.72%
표고버섯(건조)						
마늘(건조)	16%		16%	16%	16%	14.72%
무(건조)	16%		16%	16%	16%	14.72%
파(건조)	16%		16%	16%	16%	14.72%
감자(건조)	16%		16%	16%	16%	14.72%
녹두(기타)	10%		10%	3%	10%	1.8%
팥(기타)	10%		10%	3%	10%	1.8%
메니옥(신선)	28(AGR)		148Ecu/T	148Ecu/T	148Ecu/T	126.8Ecu/T
고구마(신선)	6%		6%	6%	6%	5.12%
코코넛(말린것)	FREE		FREE	2%	FREE	1.2%
캐슈넛(탈각)	5%		5%	FREE	5%	FREE
아몬드(탈각)	FREE		FREE	FREE	FREE	FREE
호도(탈각)	8%		8%	8%	8%	6.84%
밤(탈각)	7%		7%	7%	7%	6.44%
피스타치오	2%		2%	2%	2%	1.84%
잣(탈각)	4%		4%	4%	4%	3.68%
은행(탈각)						
바나나(신선/건조)	20%		20%	20%	20%	18.4%
파인애플(신선/건조)	9%		9%	9%	9%	7.72%
오렌지(신선/건조)	15%		15~20%			
감귤(신선/건조)	20%		20+132Ecu/T		20+132Ecu/T	
포도(신선)	18%					
수박(신선)	11%		11%	11%	11%	10.12%
멜론(기타/신선)	11%		11%	11%	11%	10.12%
사과(신선)	10 MIN 0.5Ecu/T					
배(신선)	13 MIN 2Ecu/T					
복숭아(신선)	22%			22%		19.6%
딸기(신선)	5/1-7/31 16 MIN 3Ecu/100kg 8/1-4/30 16%		5/1-7/31 16 MIN 3Ecu/100kg 8/1-4/30 16%	5/1-7/31 16 MIN 3Ecu/100kg 8/1-4/30 14%	5/1-7/31 16 MIN 3Ecu/100kg 8/1-4/30 16%	5/1-7/31 14.7 MIN 2.8Ecu/100kg 8/1-4/30 12.9%
감(신선)	11%		11%	11%	11%	10.12%
대추(신선)	11%		11%	11%	11%	6.6%
매실(신선)	11%		11%	11%	11%	6.6%
커피(알볶음)	4%		4%	5%	4%	3%
커피(볶음/카페인미제거)	12%		12%	13%	12%	11.12%
커피(볶음/카페인제거)	15%		15%	18%	15%	14.4%
녹 차	23%		23%	5%	23%	4.28%
홍 차	FREE		FREE	5%	FREE	3%
고추류	16%		16%	12%	16%	11.04%
제피(분쇄)	FREE		FREE	8%	FREE	4.8%
카 레	25%		25%	FREE	25%	FREE

부표 2(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7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밀(사료용)	20(AGR)		231 Ecu/T	231 Ecu/T	231 Ecu/T	197.8 Ecu/T
밀(제분용)	20(AGR)		149 Ecu/T	149 Ecu/T	149 Ecu/T	127.4 Ecu/T
맥주맥	13(AGR)		145 Ecu/T	145 Ecu/T	145 Ecu/T	124.2 Ecu/T
쌀보리	13(AGR)		145 Ecu/T	145 Ecu/T	145 Ecu/T	124.2 Ecu/T
옥수수(사료용/기타)	9(AGR)		147 Ecu/T	147 Ecu/T	147 Ecu/T	125.8 Ecu/T
멥쌀	16(AGR)		650 Ecu/T	650 Ecu/T	650 Ecu/T	556.4 Ecu/T
수수(기타)	8(AGR)		147 Ecu/T	147 Ecu/T	147 Ecu/T	125.8 Ecu/T
메밀	10(AGR)		58 Ecu/T	58 Ecu/T	58 Ecu/T	49.6 Ecu/T
조(기타)	8(AGR)		87 Ecu/T	87 Ecu/T	87 Ecu/T	74.6 Ecu/T
밀가루	30(AGR)		268 Ecu/T	268 Ecu/T	268 Ecu/T	229.6 Ecu/T
전분(밀의 것)	28(AGR)		350 Ecu/T	350 Ecu/T	350 Ecu/T	299.6 Ecu/T
전분(옥수수의 것)	27(AGR)		260 Ecu/T	260 Ecu/T	260 Ecu/T	222.4 Ecu/T
전분(감자의 것)	25(AGR)		260 Ecu/T	260 Ecu/T	260 Ecu/T	222.4 Ecu/T
전분(매니옥의 것)	28(AGR)		260 Ecu/T	260 Ecu/T	260 Ecu/T	222.4 Ecu/T
전분(고구마의 것)	28(AGR)		260 Ecu/T	260 Ecu/T	260 Ecu/T	222.4 Ecu/T
대두(채유 및 박용)	FREE		FREE	FREE	FREE	FREE
낙화생(탈각)	FREE		FREE	FREE	FREE	FREE
유채(채종 또는 콜자)	FREE		FREE	FREE	FREE	FREE
참깨	FREE		FREE	FREE	FREE	FREE
들깨씨	FREE		FREE	FREE	FREE	FREE
호프(분쇄/분상/펠리트)	12%		12%	9%	12%	7.7%
인삼류(수삼) 인삼류(백삼/분삼) 인삼류(홍삼/분삼) 인삼타브렛 인삼캡슐 인삼류(홍삼타브렛)	FREE		FREE	FREE	FREE	FREE
대두유(정제유)	8%		8%	8%	8%	6.8%
낙화생유(정제유)	8%		8%	8%	8%	6.8%
유채유(채종과콜자유/정제유)	8%		8%	8%	8%	6.8%
옥수수유(기타)	8%		8%	8%	8%	6.8%
참기름과 그 분획물	5%		5%	5%	8%	4.3%
들기름과 그 분획물	5%		3%	3%	3%	1.8%
마가린(액상마가린제외)	20.8+MOB		13+444Ecu/T	13+444Ecu/T	13+444Ecu/T	11.1+380Ecu/T
소시지	24(AGR)		24%	24%	24%	20.6%
닭고기(밀폐용기의 것)						
돼지고기 (밀폐용기의 것)	26(AGR)	Domestic Others	2450Ecu/T 17%	2450Ecu/T 17%	2450Ecu/T 17%	2097Ecu/T 14.6%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20+AGR		4740Ecu/T	4740Ecu/T	4740Ecu/T	4058Ecu/T
사탕수수당 (당도98.5도 초과)	80(AGR)		424Ecu/T	424Ecu/T	424Ecu/T	390Ecu/T
사탕무, 수수당기타	80(AGR)		524Ecu/T	524Ecu/T	524Ecu/T	482Ecu/T
유당(99%이상)						
당류(기타)	80(AGR)		5Ecu/T	5Ecu/T	5Ecu/T	4.6Ecu/T
추잉검	16.5+MOB		8+348Ecu/T MAX 23	8+348Ecu/T MAX 23	8+34.8Ecu/T MAX 23	7.3+317Ecu/T MAX 21
캔디류	21%		21%	21%	21%	18%

부표 2(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7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코코아두(안볶음)	6.7%		6.7%	3%	6.7%	1.8%
코코아두(볶음)	6.7%		6.7%	3%	6.7%	1.8%
코코아페이스트(미탈지)	12%		12%	15%	12%	12.8%
코코아버터(지와 유)	9%		9%	12%	9%	10.3%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22.3 + MOB		12+MAX 27 + AD S/Z	12+MAX 27 + AD S/Z	12+MAX 27 + AD S/Z	10.5+MAX 23.7 + AD S/Z
스파케티	17.3 + MOB		12+385Ecu/T	12+385Ecu/T	12+385Ecu/T	10.3+329Ecu/T
국 수	17.3 + MOB		12+385Ecu/T	12+385Ecu/T	12+33Ecu/T	10.3+329Ecu/T
콘플레이크	14.3 + MOB		6+313Ecu/T	6+313Ecu/T	6+313Ecu/T	5.1+268Ecu/T
식 빵	28.5 + MOB		14 + EA	14 + EA	14 + EA	12.3 + EA
비스킷, 쿠키및크래커	28.5 + MOB		13+MAX 30 + AD F/M	13 MAX 30 + AD F/M	13+MAX 30 + AD F/M	11.4+MAX 26.3 + AD F/M
오이류(조제저장처리)	22%		22%	22%	22%	20.2%
양파(조제저장처리)	22%		20%	20%	20%	18.4%
마늘(조제저장처리)						
토마토(전체또는조각상/ 조제저장처리)	18%		18%	18%	18%	16.6%
토마토페이스트	18%		18%	18%	18%	16.6%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양송이(조제저장처리)	23%		23 + 239 Ecu/100kg	23 + 239 Ecu/100kg	23 + 239 Ecu/100kg	21.2 + 220 Ecu/100kg
콩(기타/조제저장처리)	24%		24%	22%	24%	20.2%
팥(기타/조제저장처리)	24%		24%	24%	24%	22.1%
김치(조제저장처리)						
감귤류(조제저장처리)	32 + AGR		32%	32%	32%	29.4%
배(조제저장처리)	32 + AGR		32%	32%	32%	29.4%
복숭아(밀폐용기의 것)	32 + AGR		32%	32%	32%	29.4%
포도(조제저장처리)	32 + AGR					
사과(조제저장처리)						
오렌지쥬스(농축/냉동)	42 + AGR		42+257Ecu/T	42+257Ecu/T	42+257Ecu/T	38.6+237Ecu/T
오렌지쥬스(농축)	42 + AGR		42+257Ecu/T	42+257Ecu/T	42+257Ecu/T	38.6+237Ecu/T
포도쥬스(포도즙포함)	50 + AGR					
사과쥬스	42 + AGR		42+257Ecu/T	42+257Ecu/T	42+257Ecu/T	37+228Ecu/T
복숭아쥬스	42 + AGR		42+257Ecu/T		42+257Ecu/T	
파슬쥬스기타	42 + AGR		42+257Ecu/T		42+257Ecu/T	
채소쥬스						
인스탄트커피						
간 장	20%		20%	12%	20%	10.3%
토마토케첩	20%		20%	16%	20%	13.7%
된 장						
고추장						
마요네즈	20%		20%	12%	20%	10.3%
두 부						

부표 2(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7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인삼차						
인삼류(홍삼차)						
과즙음료	20%		20%	15%	20%	12.8%
기타음료	20%		20%	15%	20%	12.8%
박류(옥수수외의 것)	21(AGR)		68 Ecu/T	68 Ecu/T	68 Ecu/T	58.4 Ecu/T
박류(채두류외의 것)	8%		8%	8%	8%	6.8%
배합사료(양돈용의 것)	15(AGR)		6%	6%	6%	5.1%
배합사료(양계용의 것)						
배합사료(축우용의 것)						
잎담배(황색종)	30 MIN 29 Ecu MAX 70 Ecu/100kg		23 MIN 28Ecu MAX 30Ecu/100kg	23 MIN 28 Ecu MAX 30Ecu/100kg	23 MIN 28 Ecu MAX 30Ecu/100kg	21.2 MIN 25.6 Ecu MAX 27.6 Ecu/100kg
필터담배	180%		180%	90%	180%	58%
카세인	2%		2%	2%	2%	1.2%

주: 토마토,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등과 포도즙스의 경우는 수입기간, 설탕
합량, 포장용기(크기) 등에 따라 30여개의 관세율로 세분되어 있음.

토 마 토 : $11+37.2\text{Ecu}/100 \sim 18+37.2\text{Ecu}/100\text{kg}/\text{net}$

오 렌 지 : $4+8.9\text{Ecu}/100 \sim 20+8.9\text{Ecu}/100\text{kg}/\text{net}$

사 과 : $9 \text{ MIN } 0.45\text{Ecu}/100 \sim 8+29.7\text{Ecu}/100\text{kg}/\text{net}$

배 : $13 \text{ MIN } 2\text{Ecu}/100 \sim 10+29.7\text{Ecu}/100\text{kg}/\text{net}$

복 승 아 : $22\% \sim 22+16.3\text{Ecu}/100\text{kg}/\text{net}$

포도즙스 : $28+34 \sim 50+151\text{Ecu}/\text{hl}$ 등.

부표 3 미국의 관세율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쇠고기(신선/냉장)	4.4 ¢/kg		4.4 ¢/kg	4.4 ¢/kg	4.4 ¢/kg	4.4 ¢/kg
쇠고기(냉동)	4.4 ¢/kg		4.4 ¢/kg	4.4 ¢/kg	4.4 ¢/kg	4.4 ¢/kg
돼지고기(냉장)	Free		Free	Free	Free	Free
돼지고기(냉동)	Free		Free	Free	Free	Free
어린이양(냉장)	1.1 ¢/kg		1.1 ¢/kg	0.94 ¢/kg	1.1 ¢/kg	0.7 ¢/kg
어린이양(냉동)	1.1 ¢/kg		1.1 ¢/kg	0.94 ¢/kg	1.1 ¢/kg	0.7 ¢/kg
닭고기(냉장)	18.7 ¢/kg		18.7 ¢/kg	17.22 ¢/kg	18.7 ¢/kg	15 ¢/kg
닭고기(냉동)	11 ¢/kg		11 ¢/kg	10.12 ¢/kg	11 ¢/kg	8.8 ¢/kg
사슴고기(기타육)	Free		Free	Free	Free	Free
밀크와크림	0.4 ¢/liter		0.4 ¢/liter	0.376 ¢/liter	0.36 ¢/liter	0.34 ¢/liter
탈지분유	3.3 ¢/kg		3.3 ¢/kg	3.3 ¢/kg	3.3 ¢/kg	3.3 ¢/kg
전지분유	3.3 ¢/kg		3.3 ¢/kg	3.3 ¢/kg	3.3 ¢/kg	3.3 ¢/kg
요구르트(액상)	20%		20%	20%	15.8%	20%
유장분말	10%		10%	9.4%	9%	8.5%
버터	9.6 ¢/kg		12.3 ¢/kg	12.3 ¢/kg	12.3 ¢/kg	12.3 ¢/kg
치즈(신선)	10%		10%	10%	9%	10%
조란(닭의 것)	12.1 ¢/kg		12.1 ¢/kg	11.14 ¢/kg	10.5 ¢/kg	9.7 ¢/kg
천연꿀	2.2 ¢/kg		2.2 ¢/kg	2.08 ¢/kg	2 ¢/kg	1.9 ¢/kg
녹용(전지)	Free		Free	Free	Free	Free
튜 립	\$1.4/kg		\$1.4/1000	\$1.1984/1000	\$1.06/1000	\$0.896/1000
백 합	87 ¢/kg		66.1 ¢/kg	74.48 ¢/kg	66.1 ¢/kg	55.7 ¢/kg
과수의 것	7.5%		7.5%	6.42%	5.7%	4.8%
사과나무	Free		Free	Free	Free	Free
카네이션(절화/신선)	4%		4%	3.68%	3.5%	3.2%
백합(절화/신선)	8%		8%		7.2%	
장미(절화/신선)	8%		8%	7.52%	7.2%	6.8%
감자(기타)	0.77 ¢/kg		0.77 ¢/kg	0.658 ¢/kg	0.6 ¢/kg	0.49 ¢/kg
토마토(신선/냉장)	4.6 ¢/kg		4.6 ¢/kg	4.32 ¢/kg	4.1 ¢/kg	3.9 ¢/kg
양파(신선/냉장)	1.34 ¢/kg		1.3 ¢/kg	1.112 ¢/kg	0.99 ¢/kg	0.83 ¢/kg
마늘(신선/냉장)	1.7 ¢/kg		1.7 ¢/kg	1.328 ¢/kg	0.85 ¢/kg	0.77 ¢/kg
양배추(신선/냉장)						
배추(신선/냉장)	1.2 ¢/kg		1.2 ¢/kg	0.936 ¢/kg	0.76 ¢/kg	0.54 ¢/kg
상치(결구/신선/냉장)	0.88 ¢/kg		0.88 ¢/kg	0.688 ¢/kg	0.76 ¢/kg	0.4 ¢/kg
당근(신선/냉장)	2.2 ¢/kg		2.2 ¢/kg	1.88 ¢/kg	1.7 ¢/kg	1.4 ¢/kg
무(신선/냉장)	6%		6%	4.68%	3.8%	2.7%
오이류(신선/냉장)	4.9 ¢/kg		4.9 ¢/kg	3.82 ¢/kg	4.4 ¢/kg	2.2 ¢/kg
송이버섯(신선/냉장)	9.8 ¢/kg		11 ¢/kg	10.12 ¢/kg	9.5 ¢/kg	8.8 ¢/kg
양송이버섯(신선/냉장)	+ 25%		+ 25%	+ 23%	+ 21.7%	+ 20%
표고버섯(신선/냉장)						
호박(신선/냉장)	10%		10%	19.52%	8.7%	11.3%
감자(냉동)	17.5%		17.5%	16.1%	15.2%	14%
양파(냉동)				10.5%		Free
마늘(냉동)						

부표 3(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양파(일시저장처리)	8%		8%	6.84%	6.1%	5.1%
오이류(일시저장처리)	12%		12%	10.28%	9.1%	7.7%
마늘(일시저장처리)				0.9 ¢/kg		Free
양송이버섯(건조)	2.6 ¢/kg+		2.9 ¢/kg+	2.5 ¢/kg+	1.8 ¢/kg+	1.9 ¢/kg+2.6%
표고버섯(건조)	4%		4%	3.44%	2.5%	
마늘(건조)	35%		35%	4.04%	31.5%	2.3%
무(건조)				4.3 ¢/kg		2.5 ¢/kg
파(건조)						
감자(건조)						
녹두(기타)						
팥(기타)						
매니옥(신선)	25%		25%	19.52%	11.3%	11.3%
매니옥(기타/건조)						
고구마(신선)	10%		10%	7.8%	6.3%	4.5%
고구마(건조)						
고구마(냉동)					6.3%	
코코넛(말린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캐슈넛(탈각)	Free		Free	Free	Free	Free
아몬드(탈각)	37.5 ¢/kg		37.5 ¢/kg	32.1 ¢/kg	28.5 ¢/kg	24 ¢/kg
호도(탈각)	33.1 ¢/kg		33.1 ¢/kg	30.46 ¢/kg	28.7 ¢/kg	26.5 ¢/kg
밤(탈각)	Free		Free	Free	Free	Free
피스타치오	2.2 ¢/kg		2.2 ¢/kg	0.78 ¢/kg	2 ¢/kg	0.45 ¢/kg
잣(탈각)	22 ¢/kg		22 ¢/kg	20.24 ¢/kg	19.1 ¢/kg	17.6 ¢/kg
은행(탈각)	2.2 ¢/kg		2.2 ¢/kg	1.72 ¢/kg	1.8 ¢/kg	1 ¢/kg
바나나(신선/건조)	Free		Free	Free	Free	Free
파인애플(신선/건조)	0.64 ¢/kg		0.64 ¢/kg	0.588 ¢/kg	0.55 ¢/kg	0.51 ¢/kg
오렌지(신선/건조)	2.2 ¢/kg		2.2 ¢/kg	2.04 ¢/kg	2 ¢/kg	1.8 ¢/kg
감귤(신선/건조)	2.2 ¢/kg		2.2 ¢/kg	2.08 ¢/kg	2 ¢/kg	1.9 ¢/kg
포도(신선)	\$1.41/m'		\$1.41/m'	\$1.298/m'	\$1.22/m'	\$1.13/m'
수박(신선)	20%		20%	15.6%	12.7%	9%
멜론(기타/신선)	20%		20%	7.26%		5.4%
사과(신선)	Free		Free	Free	Free	Free
배(신선)	Free		Free	Free	Free	Free
복숭아(배타린포함)(신선)	0.4 ¢/kg		0.4 ¢/kg	Free	0.3 ¢/kg	Free
딸기(신선)	0.4 ¢/kg		0.4 ¢/kg	0.312 ¢/kg	0.3 ¢/kg	0.18 ¢/kg
감(신선)	Free		Free		Free	
대추(신선)	Free		Free			

부표 3(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매실(신선)						
커피(알루미늄/카페인미제거)	Free		Free	Free	Free	Free
커피(복음/카페인미제거)	Free		Free	Free	Free	Free
커피(복음/카페인제거)	Free		Free	Free	Free	Free
녹 차	Free		Free	Free	2.1 ¢/kg	Free
홍 차	Free		Free	Free	Free	Free
고추류(건조/분쇄않은것)	Free		Free		Free	
제피(분쇄)	Free		Free	1.98 ¢/kg	Free	Free
카 레	Free		Free	Free	Free	Free
밀(사료용)	0.77 ¢/kg		0.77 ¢/kg	0.602 ¢/kg	0.49 ¢/kg	0.35 ¢/kg
밀(제분용)	0.77 ¢/kg		0.77 ¢/kg	0.602 ¢/kg	0.49 ¢/kg	0.35 ¢/kg
맥주맥						
쌀보리						
옥수수(사료용/기타)	0.2 ¢/kg		0.2 ¢/kg	0.156 ¢/kg	0.1 ¢/kg	0.09 ¢/kg
맵 쌀	17.5%		17.5%	14.98%	13.3%	11.2%
수수(기타)	0.88 ¢/kg		0.88 ¢/kg	0.688 ¢/kg	0.44 ¢/kg	0.4 ¢/kg
메 밀	Free		Free	Free	Free	Free
조(기타)	0.7 ¢/kg		0.7 ¢/kg	0.548 ¢/kg	0.45 ¢/kg	0.32 ¢/kg
밀가루	1.1 ¢/kg		1.1 ¢/kg	0.94 ¢/kg	0.8 ¢/kg	0.7 ¢/kg
전분(밀의 것)	1.2 ¢/kg		1.2 ¢/kg	0.936 ¢/kg	0.76 ¢/kg	0.54 ¢/kg
전분(옥수수의 것)	1.2 ¢/kg		1.2 ¢/kg	0.936 ¢/kg	0.76 ¢/kg	0.54 ¢/kg
전분(감자의 것)	0.88 ¢/kg		0.88 ¢/kg	0.752 ¢/kg	0.67 ¢/kg	0.56 ¢/kg
전분(매니옥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전분(고구마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대두(채유 및 박용)	Free		Free	Free	Free	Free
낙화생(탈각)	6.6 ¢/kg		6.6 ¢/kg	6.6 ¢/kg	6.6 ¢/kg	6.6 ¢/kg
유채(채종 또는 콜자)	0.9 ¢/kg		0.9 ¢/kg	0.772 ¢/kg	0.69 ¢/kg	0.58 ¢/kg
참 깨	Free		Free	Free	Free	Free
들깨씨	Free		Free	Free	Free	Free
호프(분쇄/분상/펠리트)			16.5 ¢/kg	15.18 ¢/kg	14.3 ¢/kg	13.2 ¢/kg
인삼류(수삼)						
인삼류(백삼/분삼)			Free	Free	Free	Free
인삼류(홍삼/분삼)						
인삼타브렛 또는 인삼캡슐						
인삼류(홍삼타브렛/캡슐)						

부표 3(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대두유(정제유)	22.5%		22.5%	21.14%	20.2%	19.1%
낙화생유(정제유)	8.8 ¢/kg		8.8 ¢/kg	8.28 ¢/kg	7.9 ¢/kg	7.5 ¢/kg
유채유(정제유)	Free		Free	Free	Free	Free
옥수수유(기타)	4%		4%	3.76%	3.6%	3.4%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 ¢/kg		1.5 ¢/kg	1.172%	0.95 ¢/kg	0.68 ¢/kg
들기름과 그 분획물	5%		5%	4.28 ¢/kg	3.8%	3.2 ¢/kg
마가린(액상마가린제외)	15.4 ¢/kg		15.4 ¢/kg	14.16 ¢/kg	13.3 ¢/kg	12.3 ¢/kg
소시지	1.3 ¢/kg		1.3 ¢/kg	1.112 ¢/kg	1 ¢/kg	0.83 ¢/kg
닭고기(밀폐용기의 것)					7.6%	
돼지고기(밀폐용기의 것)	10%		10%	8.56%	7.6%	6.4%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7.5%		5%	4.5%	3.2%	Free
사탕수수당(당도98.5도 초과)	1.4606 ¢/kg		1.4606 ¢/kg	1.4606 ¢/kg	1.4606 ¢/kg	1.4606 ¢/kg
사탕무, 수수당기타	1.4606 ¢/kg		1.4606 ¢/kg	1.4606 ¢/kg	1.4606 ¢/kg	1.4606 ¢/kg
유당(합유유당 99%이상)					7.6%	
당류(기타)	6%		6%	6%	5.4%	6%
추잉껌	5%		5%	4.6%	4.3%	4%
캔디류	7%		7%	6.44%	4.3%	6.4%
코코아두(볶지아니한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코코아두(볶은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코코아페이스트(미탈지)	Free		Free	Free	Free	Free
코코아버터(지와 유)	Free		Free	Free	Free	Free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Free		Free
스파게티	Free		Free	Free	Free	Free
국 수	Free		Free	Free	Free	Free
콘플레이크	2.5%		2.5%	1.94%	1.6%	1.1%
식 빵	Free		Free	Free	Free	Free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Free		Free	Free	Free	Free
오이류(조제저장처리)	12%		12%	11.04%	10.4%	9.6%
양파(조제저장처리)	8%		8%	6.84%	5.1%	5.1%
마늘(조제저장처리)				12.8%		8%
토마토(전체또는조각상/조제저장처리)	14.7%		14.7%	13.82%	13.2%	12.5%
토마토페이스트	13.6%		13.6%	12.8%	12.3%	11.6%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7.1 ¢/kg		7.1 ¢/kg	6.66 ¢/kg	6.4 ¢/kg	6 ¢/kg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 10%		+10%	+ 9.4%	+ 9%	+ 8.5%
양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콩(기타/탈각/조제저장처리)	3.3 ¢/kg		3.3 ¢/kg	2.82 ¢/kg	2.1 ¢/kg	2.1 ¢/kg
팥(기타/조제저장처리)	3.3 ¢/kg		3.3 ¢/kg	2.58 ¢/kg	2.1 ¢/kg	1.5 ¢/kg
김치(조제저장처리)	10%		10%	8.56%	7.9%	6.4%
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3.1 ¢/kg		3.1 ¢/kg	2.66 ¢/kg	2.4 ¢/kg	2 ¢/kg
배(조제저장처리)	18%		18%	16.92%	16.2%	15.3%
복숭아(밀폐용기의 것)	20%		20%	18.8%	18%	17%
포도(조제저장처리)	13.2 ¢/kg		13.2 ¢/kg	12.16 ¢/kg	11.5 ¢/kg	10.6 ¢/kg
사과(조제저장처리)	7%		7%	6%	5.3%	4.5%

부표 3(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오렌지쥬스(농축한것/냉동)	9.25 ¢/liter		9.25 ¢/liter	8.71 ¢/liter	8.32 ¢/liter	7.9 ¢/liter
오렌지쥬스(농축한것)						
포도쥬스(포도즙포함)	6.6 ¢/kg		6.6 ¢/kg	6.2 ¢/kg	5.1 ¢/kg	5.6 ¢/kg
사과쥬스	Free		Free	Free	Free	Free
복숭아쥬스						
과실쥬스기타						
채소쥬스	0.3 ¢/liter		0.3 ¢/liter	0.256 ¢/liter	0.2 ¢/liter	0.19 ¢/liter
인스탄트커피				Free	Free	Free
간 장	3%		3%	4.8%	3%	3%
토마토케첩	7.5%		7.5%	6.9%	6.5%	6%
된 장						
고추장						
마요네즈	7.5%		7.5%		6.8%	
두 부	10%		10%	8.56%	7.6%	6.4%
인삼차						
인삼류(홍삼차)						
과즙음료	17.3%					
기타음료	0.3 ¢/liter		0.3 ¢/liter	0.256 ¢/liter	0.2 ¢/liter	0.19 ¢/liter
박류(옥수수외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박류(채두류의 것)	3%		3%	2.36%	3%	1.4%
배합사료(양돈용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배합사료(양계용의 것)						
배합사료(축우용의 것)			Free	Free	Free	Free
있담배(황색종)	79.4 ¢/kg		79.4 ¢/kg	47.64 ¢/kg	Free	Free
필터담배	92.6 ¢/kg		92.6 ¢/kg +2%	72.24 ¢/kg +1.56%	58.7 ¢/kg +1.3%	41.7 ¢/kg + 0.9%
카세인	0.44 ¢/kg		0.44 ¢/kg	0.412 ¢/kg	0.39 ¢/kg	0.37 ¢/kg

부표 4 일본의 관세율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쇠고기(신선/냉장)	50%		50%	93%	50%	67.2%
쇠고기(냉동)	50%		50%	93%	50%	67.2%
돼지고기(냉장)	10%		10%	7.5%	Free	3%
돼지고기(냉동)	10%		10%	7.5%	Free	3%
어린이양(냉장)	10%		10%	Free	Free	Free
어린이양(냉동)	10%		10%	Free	Free	Free
닭고기(냉장)	20%		20%		14%	
닭고기(냉동)	20%		20%		10%	
사슴고기(기타육)	10%		Free	3.5%	Free	1.4%
밀크와크림	35%		35%	25%+63 ¥/kg	25%+63 ¥/kg	22.78%+57.6 ¥/kg
탈지분유	45%		45%	35%+466 ¥/kg	35%+466 ¥/kg	31.88%+455 ¥/kg
전지분유	40%		40%	30%+720 ¥/kg	30%+720 ¥/kg	27.3%+655.2 ¥/kg
요쿠르트(액상)	35%		35%	35%+1076 ¥/kg	35%+1076 ¥/kg	31.88%+979.4 ¥/kg
유장분말	35%		35%	35%+500 ¥/kg	35%+500 ¥/kg	31.88%+455 ¥/kg
버터	45%		45%	35%+1159 ¥/kg	35%+1159 ¥/kg	31.88%+1054.6 ¥/kg
치즈(신선)	35%		35%	35%	35%	27.44%
조란(닭의 것)	25%		25%	25% or 60 ¥/kg	25% or 65 ¥/kg	22.78% or 54.6 ¥/kg
천연꿀	30%		30%	30%	30%	27.3%
녹용(전지)	Free		Free	Free	Free	Free
튜 립	Free		Free	Free	Free	Free
백 합	Free		Free	Free	Free	Free
과수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사과나무	Free		Free	Free	Free	Free
카네이션(절화/신선)	10%		10%	Free	Free	Free
백합(절화/신선)	10%		10%	Free	Free	Free
장미(절화/신선)	10%		10%	Free	Free	Free
감자(기타)	10%		10%	5%	5%	4.58%
토마토(신선/냉장)	10%		10%	5%	5%	3.8%
양파(신선/냉장)	10%		10%	10%	10%	9.1%
마늘(신선/냉장)	10%		10%	5%	5%	3.8%
양배추(신선/냉장)	10%		10%	5%	5%	3.8%
배추(신선/냉장)	10%		10%	5%	5%	3.8%
상치(결구/신선/냉장)	10%		10%	5%	5%	3.8%
당근(신선/냉장)	10%		10%	5%	5%	3.8%
무(신선/냉장)	10%		10%	5%	5%	3.8%
오이류(신선/냉장)	10%		10%	5%	5%	3.8%
송이버섯(신선/냉장)	10%		10%	5%	5%	3.8%
양송이버섯(신선/냉장)	10%		10%	5%	5%	3.8%
표고버섯(신선/냉장)	10%		10%	5%	5%	3.8%
호박(신선/냉장)	10%		10%	10%	10%	7.6%
감자(냉동)	10%		10%	10%	10%	9.1%
양파(냉동)	10%		10%	10%	20%	7.6%
마늘(냉동)	10%		10%	10%	20%	7.6%

부표 4(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양과(일시저장처리)	15%		15%	15%	15%	11.4%
오이류(일시저장처리)	15%		15%	15%	15%	11.4%
마늘(일시저장처리)	15%		15%	10%	10%	7.6%
양송이버섯(건조)	15%		15%	15%	15%	13.68%
표고버섯(건조)	15%		15%	15%	15%	13.68%
마늘(건조)	15%		15%	15%	15%	11.4%
무(건조)	15%		15%	15%	15%	11.4%
파(건조)	15%		15%	15%	15%	11.4%
감자(건조)	15%		15%	15%	15%	11.4%
녹두(기타)	Free		Free	Free	Free	Free
팥(기타)			12¥/kg	417¥/kg	417¥/kg	379.2¥/kg
매니옥(신선)	25%		25%	Free	20%	Free
매니옥(기타/건조)	25%		25%	15%	20%	11.4%
고구마(신선)	15%		15%	15%	20%	13.68%
고구마(건조)	15%		15%	15%	15%	13.68%
고구마(냉동)	15%		15%	15%		13.68%
코코넛(말린것)	20%		20%		6%	
캐슈넛(탈각)	20%		20%	Free	Free	Free
아몬드(탈각)	Free		Free	Free	Free	Free
호도(탈각)	30%		30%	20%	10%	14%
밤(탈각)	20%		20%	16%	16%	12.16%
피스타치오	20%		20%	9%	Free	3.6%
잣(탈각)	Free		Free		Free	
은행(탈각)	20%		20%		5%	
바나나(신선/건조)	30%		30%	40%	40%	28%
파인애플(신선/건조)	20%		20%	20%	20%	2%
오렌지(신선/건조)	20%		20%	26.6%	20%	20.24%
감귤(신선/건조)	20%		20%	26.6%	20%	20.84%
포도(신선)	20%		20%	13%	20%	9.88%
수박(신선)	20%		20%	10%	10%	7.6%
멜론(기타/신선)	20%		20%	10%	10%	7.6%
사과(신선)	20%		20%	20%	20%	18.2%
배(신선)	20%		20%	8%	8%	6.08%
복숭아(넥타린포함)	20%		20%	10%	10%	7.6%
딸기(신선)	20%		20%	10%	10%	7.6%
감(신선)	20%		20%	10%	10%	7.6%
대추(신선)	20%		20%	10%	10%	7.6%
매실(신선)	20%		20%	10%	10%	7.6%
커피(알볶음)	Free		Free	Free	Free	Free
커피(볶음/카페인메저)	35%		35%	20%	20%	15.2%
커피(볶음/카페인제거)	35%		35%	20%	20%	15.2%
녹 차	35%		35%	20%	20%	18.2%
홍 차	35%		35%	20%	20%	15.2%

부표 4(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고추류(건조/분쇄않은것)	25%		25%	10%	7%	7.6%
계피(분쇄)	Free		Free	Free	Free	Free
카 레	30%		30%	12%	12%	9.12%
밀(사료용)	20%		20%	65¥/kg	65¥/kg	59¥/kg
밀(제분용)	20%		20%	65¥/kg	65¥/kg	59¥/kg
맥주맥	10%		10%	46¥/kg	46¥/kg	41.8¥/kg
쌀보리	10%		10%	46¥/kg	46¥/kg	41.8¥/kg
옥수수(사료용/기타)	10%		10%	Free	Free	Free
멥 쌀	15%		15%		15%	
수수(기타)	5%		5%	Free	Free	Free
메 밀	15%		15%	Free	Free	Free
조(기타)	Free		Free	Free	Free	Free
밀가루	25%		25%	106¥/kg	106¥/kg	96.4¥/kg
전분(밀의 것)	25%		25%	158¥/kg	158¥/kg	143.6¥/kg
전분(옥수수의 것)	25%		25%	140¥/kg	140¥/kg	127.4¥/kg
전분(감자의 것)	25%		25%	140¥/kg	140¥/kg	127.4¥/kg
전분(매니옥의 것)	25%		25%	140¥/kg	140¥/kg	127.4¥/kg
전분(고구마의 것)	25%		25%	140¥/kg	140¥/kg	127.4¥/kg
대두(채유 및 박용)	4.8¥/kg		4.8¥/kg	Free	Free	Free
낙화생(탈각)	20%		20% or 14¥/kg	726¥/kg	726¥/kg	660.6¥/kg
유채(채종 또는 콜자)	6.10¥/kg		6.10¥/kg	Free	Free	Free
참깨	Free		Free	Free	Free	Free
들깨씨	Free		Free	Free	Free	Free
호프(분쇄/분상/펠리트)	5%		5%	5%	5%	4.58%
인삼류(수삼) 인삼류(백삼/분삼) 인삼류(홍삼/분삼) 인삼타브렛 인삼류(홍삼타브렛/캡슐)	10%		10%	5%	5%	4.58%
대두유(정제유)	28¥/kg		28¥/kg	20.7¥/kg	20.7¥/kg	16.2¥/kg
낙화생유(정제유)	28¥/kg		28¥/kg	20.7¥/kg	20.7¥/kg	14.52¥/kg
유채유(제종과콜자유/정제유)	28¥/kg		28¥/kg	20.7¥/kg	20.7¥/kg	16.2¥/kg
옥수수유(기타)	28¥/kg		28¥/kg	20.7¥/kg	20.7¥/kg	14.52¥/kg
참기름과 그 분획물			20¥/kg	17¥/kg	17¥/kg	11.9¥/kg
들기름과 그 분획물	Free		Free	Free	Free	Free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	35%		35%	35%	35%	31.88%
소시지	25%		25%	25%	10%	16%
닭고기(밀폐용기의 것)					Free	
돼지고기(밀폐용기의 것)	25%		25%	10%	10%	9.1%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25%		25%		25%	

부표 4(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사탕수수당(당도98.5도 초과)	41.5¥/kg		41.5¥/kg	84.5¥/kg	10¥/kg	71.8¥/kg
사탕무, 수수당기타	63.5¥/kg		63.5¥/kg	124.9¥/kg	63.5¥/kg	106.2¥/kg
유당(함유유당 99%이상)					10%	
당류(기타)	35%		35%	35%	35%	31.88%
추잉껌	40%		40%	30%	40%	26.4%
캔디류	Free		Free	Free	Free	Free
코코아두(볶지아니한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코코아두(볶은 것)						
코코아페이스트	20%		20%	10%	10%	7%
코코아버터(지와 유)	10%		10%	2.5%	Free	1%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35%		35%	35%	28%+799¥/kg	31.88%
스파게티	50¥/kg		50¥/kg	40¥/kg	40¥/kg	34¥/kg
국 수	50¥/kg		50¥/kg	32¥/kg	32¥/kg	29.12¥/kg
콘플레이크	30%		30%	19.2%	15.4%	14.58%
식 빵	30%		30%	15%	12%	14.64%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30%		30%	34%	12%	22.6%
오이류(조제저장처리)	35%		35%	25%	15%	19%
양파(조제저장처리)	35%		35%	25%	15%	19%
마늘(조제저장처리)	35%		35%	15%	10%	10.5%
토마토(전체또는조각상/조제저장처리)	25%		25%	15%	9.6%	14.64%
토마토페이스트	35%		35%	22.4%	22.4%	17%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35%		35%	22.4%	22.4%	17%
양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콩(기타/조제저장처리)	35%		35%	28%	14%	19.6%
팥(기타/조제저장처리)	35%		35%	22.4%	22.4%	17%
김치(조제저장처리)	35%		35%	28%	14%	19.6%
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35%		35%	46.5%	35%	36.48%
배(조제저장처리)	35%		35%	25%	25%	19%
복숭아(밀폐용기의 것)	35%		35%	33.2%	25%	26.06%
포도(조제저장처리)	25%		25%		20%	
사과(조제저장처리)	25%		25%		20%	
오렌지류스(농축한것/냉동)	35%		35% or 27¥/kg	39.8%	35% or 27¥/kg	31.22%
오렌지류스(농축한것)	35%		35% or 27¥/kg	39.8%	35% or 27¥/kg	31.22%
포도류스(포도즙포함)	35%		35% or 27¥/kg	35.9%	35% or 27¥/kg	28.16%
사과류스	35%		35% or 27¥/kg	35.9%	40% or 27¥/kg	28.16%
복숭아류스	35%		35% or 27¥/kg	35.9%	35% or 27¥/kg	28.16%

부표 4(계속)

품 목 명	1990		1995		1998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기 본	양 허
과실쥬스기타	35%		35% or 27 ¥/kg	22.5%	35% or 27 ¥/kg	17.64%
채소쥬스	35%		35% or 27 ¥/kg	13.5%	35% or 27 ¥/kg	8.1%
인스탄트커피					24%	
간 장	25%		25%	12%	9.6%	9.12%
토마토케첩	25%		25%	33.2%	25%	26.06%
된 장	25%		25%		12.8%	
고추장	25%		25%		12.8%	
마요네즈	25%		25%	25%	12.8%	17.68%
두 부	35%		35%	35%+1359 ¥/ kg	35%+1359 ¥/ kg	31.88%+1236.6 ¥/ kg
인삼차	35%		35% or 27 ¥/kg		35%+799 ¥/kg	
인삼류(홍삼차)	35%		35% or 27 ¥/kg		35%+799 ¥/kg	
과즙음료	35%		35%	22.4%	22.4%	17%
기타음료	35%		35%	16%	22.4%	12.16%
박류(옥수수 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박류(채두류 의 것)	Free		Free	Free	Free	Free
배합사료(양돈용 의 것)	10%		10%	5%	5%	3.8%
배합사료(양계용 의 것)						
배합사료(축우용 의 것)						
알담배(황색종)	Free		Free	Free	Free	Free
필터담배	60%		60%	10%+342 ¥ /1000개피	20%	9.1%+311.22 ¥ /1000개피
카세인	Free		Free		Free	

참 고 문 헌

- 관세청, “관세정책 운영 방안,” 1998. 5.
- 김광석·홍성덕, 「명목 및 실효보호율구조의 장기적 변화」, 연구보고서 82-02, 한국개발연구원, 1982. 3.
- 김진수·안종석,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4-03, 한국조세연구원, 1994. 5.
- 농림부, 「농림산물 품목분류」, 1998. 1.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피해구제 관련 관세제도의 개편방향」, 1995. 8.
- , 「대외무역법」, 1997.
- , 「관세법의 발전적 개편방향」, 1994. 8.
- 박상태, 「관세정책요론: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1996.
- 박진수, 「국제화시대를 맞이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연구보고서 321호, 산업연구원, 1994. 6.
- 신영섭·하병기, 「산업지원강화를 위한 관세율구조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217호, 산업연구원, 1991. 3.
- 유정호·홍성훈·이재호,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연구보고서 93-02, 한국개발연구원, 1993. 6.
- 이춘삼·한규영, 「국제관세제도론: 이론과 실무」, 동성사, 1991.
- 천상덕·이건우·유진근,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11호, 산업연구원, 1990. 11.

최낙균 · 신현수, 「UR이후 저관세를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연
구보고서 제258호, 산업연구원, 1993. 1.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1998.

Balassa, B.,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PE, pp. 573~594, 1965.

———,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Jo-
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Corden, W. 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71.

빈

면

연구보고 R383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찍은날 1998. 12. 펴낸날 1998. 12.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30-7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